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30주년

아동 · 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토론회

그루밍 범죄화와 성적동의연령 기준 재정립
2019.11.28(목) 10시-13시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다이아몬드홀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

아동 · 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토론회

“그루밍 범죄화와 성적동의연령 기준 재정립“

2019.11.28.(목) 10시-13시
하이유스호스텔 다이아몬드홀



(사)탁틴내일

여성과 아동, 청소년이 스스로 중심이 되어 주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꿈을 현실화하고, 봉사로서 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밝게 변화시키는 장이 되고자 1995년 3월 1일 창립한 여성과 아동, 청소년을 위한 사회단체입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365-25-0003747 (사)탁틴내일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탁틴내일청소년성문화센터

#탁틴스쿨와~이동성교육버스#ECPAT KOREA탁틴#탁틴내일연구소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아동·청소년의 성적권리와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1997년 1월3일 개소하여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지원, 아동·청소년 성적 권리증진 활동, 성폭력 관련 연구 활동을 합니다.

[2019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토론회] 그루밍 범죄화와 성적동의연령 기준 재정립

1. 개요

- ☐ 일시: 2019.11.28.(목) 10:00-13:00
- ☐ 장소: 하이서울유스호스텔 B1 다이아몬드홀
- ☐ 공동주최: (사)탁틴내일,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ECPATKOREA탁틴

2. 프로그램

09:30~10:00 (30')	· 접수 및 등록
10:00~10:10 (10')	· 개회 및 인사말
사회_이 현 숙(탁틴내일 상임대표)	
기조발제	
10:10~10:30 (20')	· 성적동의연령 상향의 필요성 _권현정(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주제발제	
10:30~12:20 (110')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해자는 어떻게 형량을 줄이는가? _정희진(탁틴내일연구소 연구원)
	2. 한국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죄사건, 각 나라에게 물었다. (국가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기준 비교분석) _강선혜(탁틴ECPAT KOREA 팀장)
	3. International standards of age of consent and global action against child grooming (성적동의연령의 국제기준과 그루밍 범죄에 대한 국제기구의 조치) _Thomas Muller(ECPAT International Deputy Executive)
	4. 그루밍 범죄 법제화 _김재련(법무법인 온 세상 변호사)
	5.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위장수사의 필요성 _장응혁(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12:20~13:00 (40')	종합토론 및 폐회

[2019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토론회]

그루밍 범죄화와 성적동의연령 기준 재정립 CONTENTS

1. 성적동의연령 상향의 필요성	9
_ 권현정(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부소장)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해자는 어떻게 형량을 줄이는가?	23
_ 정희진(탁틴내일연구소 연구원)	
3. 한국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죄사건, 각 나라에게 물었다. (국가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기준 비교분석)	37
_ 강선훈(탁틴ECPAT KOREA 팀장)	
4. International standards of age of consent and global action against child grooming	47
(성적동의연령의 국제기준과 그루밍 범죄에 대한 국제기구의 조치)	
_ Thomas Muller(ECPAT International Deputy Executive)	
5. 그루밍 범죄 법제화	91
_ 김재련(법무법인 온 세상 변호사)	
6. 아동·청소년 정보호를 위한 위장수사의 필요성	101
_ 장응혁(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1.

성적동의연령 상향의 필요성

권 현 정(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성적동의연령 상향의 필요성

타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권 현 정

1

순 서

- 들어가며
- 성적동의연령 상향의 필요성(사례 중심으로)
- 청소년 성보호 입법 관련 설문조사 결과
- 개선방향

2

들어가며

- 성적동의연령 문제는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우리 사회가 성인들이 몇 살 이상의 아동·청소년과 서로 동의한다면 성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때, 성폭력 관련법의 보호법익
 - 의제강간 조항의 보호법익: 형법상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와는 달리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문제가 아니라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 (대법원 2006. 1. 13, 2005도6791 판결)

3

들어가며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때는 유무죄의 기준이 '동의' 여부와 별도로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의 보호'가 우선되도록 법을 보완하여 처벌의 공백을 메우고 확실성을 높여 범죄예방효과를 꾀해야
- 성적동의연령 문제는 의제강간 연령 상향, 대상청소년 조항 삭제, 그루밍 범죄화 등 여러 법적 과제들과 관련되어 있으나 현 시점에서 시급하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4

청소년들의 온라인 성폭력 피해 실태

전국 중고등학생 온라인 설문조사. 최종 응답자 43,544명

(단위: 명, %)

구 분	중	고	여	남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사람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받은 적 있다.	2,168 (10.7)	2,960 (12.7)	2,889 (13.9)	2,240 (9.9)
동의 없이 알몸이나 성기 사진, 음란물 등을 전송 받은 적이 있다.	828 (4.1)	1,354 (5.8)	1,432 (6.9)	750 (3.3)
온라인에서 성관계를 제안 받은 적 있다(스팸 제외).	443 (2.2)	697 (3.0)	662 (3.2)	476 (2.1)
나의 신체 또는 성행위가 담긴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받아 본 적 있다.	81 (0.4)	163 (0.7)	96 (0.5)	147 (0.6)
성행위나 신체노출을 촬영하자고 또는 촬영해 보내달라고 요구받은 적 있다.	267 (1.3)	490 (2.1)	586 (2.8)	171 (0.8)

출처: 교육부(2019), 디지털 환경에서의 학생 성폭력 실태조사 및 정책개선방안연구

5

온라인 상의 아동·청소년 성적 착취 사례

- 성인(24세 남)이 중1 여학생(만13세)과 온라인 게임 통해 만나 5개월 간 전화 및 영상통화, 채팅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몸 사진과 성적 행동을 하는 동영상 주고 받음. 가해자는 자신이 성범죄 전력이 있다는 것을 4개월 후 알림.
- 온라인 상 성착취가 가능하다 보니 피해자가 해외유학 중이거나 가해자가 외국에 거주하거나 외국인인 경우 등 국경을 넘나드는 경우도 발생.
- 가해자들은 청소년들의 관심 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 성적호기심을 이용해 관계에서 취약한 상태의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대상이 되어주며 피해촬영물을 요구. 유포 협박하며 자신이 원하는 피해촬영물을 지속적으로 요구함.

6

온라인 상의 아동·청소년 성적 착취 사례

- 피해청소년들이 가해자와 사랑하는 사이, 사귀는 사이라고 여겨 연락한 메시지를 보면 가해자의 요구에 맞춰주거나 자발적으로 보낸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많음. 부모들은 성적 사진이나 동영상을 서로 주고 받은 것을 보고 자녀가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고 성폭력이 아니라 판단하여 신고를 포기.
- 강요죄(5년 이하 징역)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2년 이하 징역)등으로 고소되어도 청소년이 진술을 거부해 수사가 어려워지는 사례 많음.

7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성매매 사례

- 성인 남성이 중3 여학생과 온라인에서 만나 성적인 대화 시도. 여학생이 화를 내자 모욕감을 줬으니 만나서 직접 사과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협박 후 만나서 강간. 이후 여학생은 여러 사람과 성적 만남을 반복하는 후유증 보임.
- 중3 여학생이 랜덤채팅으로 성인을 만나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함. 여학생은 학교에 낙태, 성매매와 관련된 소문이 나며 학교를 옮기게 됨. 이후 온라인에서 만난 성인들과 성관계, 성매매를 반복적으로 경험.
- 2017년도 대전 여중생 자살사건에서 보여지듯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은 피해를 계기로 학업중단, 성매매로의 유입, 자해, 자살 등으로 삶이 굴절되는 피해를 당하기도 하나 연령이 13세 이상이라 신고도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음.

8

아동·청소년 성착취 처벌에서의 문제점

- 24세 성인남성이 12세 여자청소년과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의 몸을 촬영함. 의제강간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로 고소. 합의, 초범, 좋은 대학을 다닌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로는 고소도 되지 않음.(2019년)
- 중3 여학생이 친구의 소개로 성인남성 2명과 술을 먹은 후, 친구와 함께 집에서 2명에게 강간을 당했는데 저항하지 않았다, 이후 가해자와 사귀었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받음.(2016년)

9

아동·청소년 성착취 처벌에서의 문제점

- 세계일보 취재팀이 2017~2019년 전국 법원이 선고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1심 판결 49건을 분석해보니 실형 선고까지 이어진 경우는 10건 중 4건 (42.9%)에 불과. 집행유예가 53.1%인데 그 이유로 법원은 '초범',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들었고 봉사활동 실적·장기 기증자 등록 등 범행과 무관한 이력 면죄부로 작용.(세계일보 2019. 8. 21. 초범이라고... 반성한다고... 창살 비집고 나온 '인면수심' [탐사기획-'은별이 사건' 그후])

10

청소년 성보호 입법 관련 여론조사

탁틴내일 의뢰, 현대리서치연구소 실시. 전국 거주 성인 대상 1000명

-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이 법 제도를 통해 성범죄와 성적 학대 등 성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렇지 않다 63.7% 그렇다 34.3% 모름 2.0%
- 아동의 성보호를 위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피해 아동의 연령을 상향조정하자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찬성한다 76.8% 반대한다 16.7% 잘 모름 6.5%

11

청소년 성보호 입법 관련 여론조사

탁틴내일 의뢰, 현대리서치연구소 실시. 전국 거주 성인 대상 1000명

- 그렇다면 아동의 연령을 몇 세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만 13세 이하	만 14세 이하	만 15세 이하	만 16세 이하	만 17세 이하	만 18세 이하	잘 모르겠다
21.1	9.8	19.8	14.6	7.2	24.9	2.7

12

청소년 성보호 입법 관련 여론조사

탁틴내일 의뢰, 현대리서치연구소 실시. 전국 거주 성인 대상 1000명

- 아동의 성보호를 위해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피해 아동의 연령을 상향조정하자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찬성한다 74.9% 반대한다 18.5% 잘 모름 6.6%

- 그렇다면 아동의 연령을 몇 세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만 13세 이하	만 14세 이하	만 15세 이하	만 16세 이하	만 17세 이하	만 18세 이하	잘 모르겠다
17.2	10.0	21.5	15.4	8.0	25.5	2.4

13

청소년 성보호 입법 관련 여론조사

탁틴내일 의뢰, 현대리서치연구소 실시. 전국 거주 성인 대상 1000명

- 현재 성인이 12세 이하 아동과 성행위를 하더라도 해당 아동이 12세 이하라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일정 연령 이하의 경우엔 아동의 연령을 몰랐던 경우라도 처벌하자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찬성한다 80.6% 반대한다 14.3% 잘 모름 5.1%

- 그렇다면 아동의 연령을 몇 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만 13세 이하	만 14세 이하	만 15세 이하	만 16세 이하	만 17세 이하	만 18세 이 하	잘 모르겠다
25.4	9.1	20.7	14.3	6.1	20.5	4.0

14

청소년 성보호 입법 관련 여론조사

탁틴내일 의뢰, 현대리서치연구소 실시. 전국 거주 성인 대상 1000명

- 성인이 아동·청소년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 착취를 벌이는 '그루밍(grooming) 성범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렇다 83.0% 그렇지 않다 8.6% 잘 모름 8.4%
- 아동·청소년이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성인에게 애정표현을 했거나 성관계 당시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성인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찬성한다 79.7% 반대한다 14.1% 잘 모름 6.2%

15

청소년 성보호 입법 관련 여론조사

탁틴내일 의뢰, 현대리서치연구소 실시. 전국 거주 성인 대상 1000명

- 채팅어플, SNS메신저, 게임 등 온라인에서 성인이 아동·청소년에게 몸 사진을 요구하거나 성매매 등 성적 제안을 하는 그루밍 행위만으로도 처벌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찬성한다 86.6% 반대한다 9.5% 잘 모름 3.9%
- 영국, 미국 등의 위장수사 기법을 국내에도 도입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의도가 있는 사람들을 검거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찬성한다 82.2% 반대한다 11.5% 잘 모름 6.3%

16

‘성적남용의 구성요건 도입안’ 전문가 대상 델파이조사 결과

법학자, 경찰, 검찰, 판사, 젠더폭력 관련 NGO 활동가 등 전문가 50명 내외 조사

-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서 ‘의제강간 규정 도입(상대방이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배제)’ 규정은 응답자의 62.5%가 지지. 많은 전문가들은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성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 또한 ‘양육, 교육, 위탁 등 보호감독에 있는 자의 간음 등’ 규정은 56.3%가 지지. 많은 전문가들은 신뢰보호 관계에서 진정한 의미의 동의가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 16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양육, 교육, 위탁 등 보호감독 지위에 있는 자의 간음 등’ 은 66.7%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업무고용 등 보호감독 지위에 있는 자의 간음 등 58.3%, 치료, 상담 등 보호감독 지위에 있는 자의 간음 등 56.3% 순으로 지지

17

개선방향-의제강간 연령 16세로 상향

- 의제강간연령 16세로 상향하여 처벌의 확실성 확보.
 - 최근 신설된 ‘궁박한 상태’ 이용 간음 조항의 경우, 개념의 모호함과 입증문제로 한계.
 - 단,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교 또는 성적 행위를 한 자가 행위 당시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가해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다고 범죄를 부인하는 경우(해외 입법례 참고)
 - 뉴질랜드는 12세, 영국은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잘못 알았다고 해도 가해자에게 절대적 책임을 묻음.
 - 뉴질랜드, 캐나다에서는 피해자가 의제강간 연령 미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 가해자는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절차를 밟았는지 엄격하게 확인.

18

개선방향-16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 보호방안

-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양육, 교육, 위탁 등 보호감독 지위에 있는 성인이 신뢰관계를 이용해 성교 또는 성적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 신설
- 보호감독 지위가 아니더라도 온,오프라인에서 신뢰를 쌓아 성교 또는 성적 행위를 하는 것도 포섭하는 방안 모색 필요

19

개선방향-온라인 그루밍 범죄화

- 성적인 대화나 행위에 참여시키는 것,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고 유인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 국제실종.착취아동센터는 성적 목적의 아동 온라인 그루밍 모델 법률
 - 온라인 그루밍을 특정하는 법
 - 온라인 그루밍 정의
 - 아동을 만날 목적의 온라인 그루밍
 - 아동을 만날 목적이 없는 온라인 그루밍
 - 아동에게 포르노그래피 보여주기 범죄화 등 제안.
- 한국은 아동에게 포르노그래피 보여주기만 법제화된 상태

20

개선방향-대상 청소년 조항 삭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매수가 된 청소년은 피해자로 보지 않고 단지 성매수 대상일 뿐이며 피의자로 조사받고 보호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성착취 피해자로 지원하라는 아동 권리협약이나 란사로테 협약 등 국제적인 기준과도 맞지 않는다.
- 지난해 2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대상 청소년의 개념을 삭제한 아청법 개정법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법제사법위원회는 관련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21

개선방향-위장수사

- 영국, 미국, 네덜란드 등에서는 기회제공형 위장 수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범죄자를 검거하고 있다. 피해가 발생한 후에 개입하는 것은 늦기때문에 위장수사로 피해 발생 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범죄를 차단해야 한다.
- 채팅하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경찰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미성년자에게 함부로 만남을 제안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22

개선방향-신고의무자에 온라인 기업도 포함

- 온라인을 매개로 하는 아동 성범죄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촬영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은 아동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 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공간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가 일어난다는 의심이 생기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 더불어 정부 주도 규제도 필요하지만 민간의 자율적인 규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23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는
어떻게 형량을 줄이는가?

정 희 진(탁틴내일연구소 연구원)

그루밍 범죄화와 성적 동의연령 기준 재정립을 위한 토론회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는 어떻게 형량을 줄이는가?

(사)탁틴내일연구소 연구원 정희진

목 차

1. 성폭력 감형 ‘팁?’
2.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감형 사례분석

1. 성폭력 감형 ‘팁?’

NAVER 카페

성범죄 전문지식 공유카페

성범죄와 관련된 고민이 있는 그분께!

미투 / 성폭력 / 성범죄와 관련된 모든 걱정거리·고민상담·정보공유 커뮤니티 성전카페

오늘 5,918 전체 2,850,202

전체글보기 · 공지사항[필독] · 카페활동수칙[필독] · <카페변호사 주요활동> · <사건최종결과·경험담> · 베스트게시글

5

1. 성폭력 감형 ‘팁?’

NAVER 카페

성범죄 전문지식 공유카페

성범죄와 관련된 고민이 있는 그분께!

미투 / 성폭력 / 성범죄와 관련된 모든 걱정거리·고민상담·정보공유 커뮤니티 성전카페

오늘 5,918 전체 2,850,202

전체글보기 · 공지사항[필독] · 카페활동수칙[필독] · <카페변호사 주요활동> · <사건최종결과·경험담> · 베스트게시글

성전카페에 관한 이해와 관련 배로잡기

카페소개

다시보기

법률전문가 상담신청

심리상담사 상담신청

운영진과 소통하기

전행 중 사건 이야기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자유롭게 묻답하기

이런저런 남두려

신세한 하소연

6

1. 성폭력 감형 ‘팁?’

구분	종지	반영문	한문서	하영계	해보제	[187]	2019.08.04	5,807	0
▶ 전제금보기	32,088	종지	나무그노제	심려상담소	추진원단	[216]	2018.05.31	6,256	0
▶ 베스트가시글		종지	국사재	특성비행	처음부터	끝까지	마세요	[270]	
▶ 카레지식활동		종지	성간카레	회원여러분	우려들교회로	오세요	[154]	2019.04.18	2,558
▶ 공지사항[월독]		종지	성간카레의	규칙을	제거하지	바랍니다	[263]	2019.01.07	3,653
▶ 카레활동수칙[월독]		종지	성간카레는	여러 곳입니다	(연평해	보도원	지파)	[212]	2018.11.18
▶ <운영비금	소통하기	종지							
▶ <상동회원	등업신청								
▶ 카레 주요서비스		45903	궁금합니다	[4]			2019.11.13	101	0
▶ 법률전문	상담	45156	(온라인매제성회동)	역직기소	지분종업	[26]	2019.11.04	420	0
▶ 심리상담	상담	44147	학문체로	아동복지법	위반사례	[4]	2019.10.24	192	0
▶ 반성문	작성	43921	진술내용	이따를경우	[16]		2019.10.22	298	0
★ 나익사		43704	제정어를	내용복구문의	[3]		2019.10.21	173	0
▶ 나익사		43703	연말제임	으로만났는	데	알고보니	청소년	아청병	[6]
▶ 나익사		43442	★ [월독][공지]	경정형	등업	관련	요역제	드립니다	★ [8]
▶ 나익사		42652	공정작성	아영계	대차하요	[1]	2019.10.12	235	0
▶ 나익사		42513	거당	결과를	알려주지	않아요	[6]	2019.10.11	254
▶ 나익사		41469	역술한	일단지	부주서요	트트	[14]	2019.10.01	339
▶ 나익사		39700	후회	신하요	[26]		2019.09.17	540	0
▶ 나익사		39593	조간만	났어요	[26]		2019.09.16	921	0

1. 성폭력 감형 ‘팁?’

전체글보기 · **공지사항[목록]** · **카페활동수칙[목록]** · **<카피번서 주요활동>** · **<사건기록결과·경험담>** · **배스트게시글**

★ **카페정보** 나의활동

이민지 법학도사
 since 2010.08.27.
 카페소개

로그인
회원가입

카페 가입하기

카페 채팅

검색

- [전체글보기] 32,088
- [배스트게시글]
- [+ 카페지식활동]
- [공지사항[목록]]
- [카페활동수칙[목록]]
- [<운량진과 소중하기> ①
- [<강동희원 졸업생상> ①

아동청소년-미성년자

나의사진 글쓰기의 주제별 분류

☐ 공지 숨기기
 ☐ 글 목록
 ☒ 15개씩

	제목	작성일자	조회	좋아요	
36163	동영상업로드 관련 문의 [6]	허니	2019.08.20.	245	0
35649	신고하러ยม [12]	조금만더요 ♡	2019.08.16.	313	0
35639	검찰에 서류는 언제쯤...? ⑤ [5]	예뵘이무서워지네요	2019.08.15.	205	0
35442	도와주세요... ⑨ [11]	극공	2019.08.14.	577	0
34488	아청법 위계등중행 도와주세요ㅠㅠㅠ [7]	무말랭이 ♡	2019.08.06.	524	0
34104	아청 상황입니다 [39]	kicck ㄹ	2019.08.02.	1,488	1
34094	하... 전 월세야할지 모르겠습니다... [30]	아청밤 ♡	2019.08.02.	1,172	0
33917	너무 힘들어요... [8]	고통스럽게요 ♡	2019.07.31.	474	0
33456	성매수관련 [8]	julakim ♡	2019.07.28.	439	0
33301	안녕하세요... [21]	뽕 ♡	2019.07.26.	504	0
33084	너무 큰죄를 지었습니다... ⑥ [36]	qazwsx0426 ♡	2019.07.25.	1,474	0

1. 성폭력 감형 ‘팁?’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감형
필수 꿀 팁!

1. 성범죄교육이수 수료증
2. 심리상담 소견서(카페발급 가능)
3. 봉사활동 증명서
4. 기부 내역서(서약서/아동 및 여성단체)
5. 헌혈증
6. 장기기증 서약서
7. 가족과 화목하게 찍은 사진

9

2.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감형 사례분석

조사방법 및
조사개요

- ✓ A 법무법인 성공사례 분석
- ✓ 자료수집: 2014년 10월 ~ 2019년 8월까지(총 189개)
- ✓ 중복사례 4건, 피해자 연령확인 불가능한 사례 30개 분석대상 제외
- ✓ 그 외 정보분석 불가사례 제외
- ✓ 최종 분석결과 **148개**

10

2.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감형 사례분석

✓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선고결과

19세 미만	간음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성매수, 성매매, 성매매 알선	강제추행	음란물 소지, 음란물 배포	기타
148	8	26	60	41	12	1

11

2.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감형 사례분석

✓ 간음

선고결과	건수	법정형(기준)
간음	검사항소기각	2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 •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5항)
	혐의없음	5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5항)
	기타	1
	합계	8

12

2.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감형 사례분석

✓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선고결과	건수	법정형(기준)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2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검사항소기각	3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혐의없음	11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징역 및 집행유예(2-3년, 3-5년)	6	• 5년 이상,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구속취소, 불기소처분	2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소년부 송치	1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참고인 조사후 내사종결	1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합계	26	

13

2.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감형 사례분석

✓ 성매수 및 성매매, 알선 등

	선고결과	건수	법정형(기준)
성매수 및 성매매(알선)	혐의없음	26	
	기소유예(조건부 포함)	5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 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검사항소기각	3	
	구속영장청구기각	4	
	벌금형	8	
	징역 및 집행유예	3	
	기타	11	
	합계	60	

14

2.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감형 사례분석

✓ 강제추행

	선고결과	건수	법정형(기준)
	무혐의(증거불충분)	10	•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강제추행	벌금형	4	•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경우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소유예(조건부 포함)	8	
	합의	1	• 2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 및 집행유예 (8개월-3년, 1-3년)	13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
	항소기각	2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기타	1	•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부과
	집행유예	2	
합계		41	15

2.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감형 사례분석

✓ 음란물 소지, 제작, 배포 등

	선고결과	건수	법정형(기준)
	기소유예(조건부)	6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음란물소지 및 제작, 배포	벌금형	2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 집행유예(2년 6개월/3년)	2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혐의없음	1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구속영장기각	1	▪ 5년 이상의 징역형
	합계	12	

2.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감형 사례분석

사례 1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어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후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게 되었는데,
교제관계를 이어 나가면서 상대 여성에게 용돈을 주거나 선물을 사주기도 하였고 합의하에 성관계
미성년자인 상대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상대 여성의 성을 매수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

의뢰인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볼 때 **매우 비난 받아야 하고 잘못된 점은 맞지만**
엄격한 법적 의미에서 볼 때 의뢰인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으며
상대 여성과 **사귀면서 스스로 없이 서로 스킨십과 성관계를 하고** 연인관계에서 용돈을 주거나
선물을 했을 뿐임을 부각하며 기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제반 자료를 제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17

2.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감형 사례분석

사례 2

의뢰인은 제자였던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와 함께 성관계를 했던 것은 맞지만 피해자와 교제하는 사이로 결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변호인은 의뢰인을 상담한 후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파악하고 카카오톡 메시지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이성적인 호감을 바탕으로 교제를 하는 사이였다는 점을 강력하게 지적하였습니다.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고 내사 종결되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함

18

2.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감형 사례분석

사례 3

과외수업을 해주는 강사로 일하던 의뢰인은 자신에게 수업을 듣던 제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는데,
성관계 직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간으로 신고하며 조사

제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성관계 당시 협박이나 폭행은 물론
피해자가 위협을 느꼈만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 역시 성관계 당시
의뢰인에게 싫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며,
의뢰인이 위계,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을 끈질기게 설득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19

2.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감형 사례분석

사례 4

인터넷을 통하여 성매매를 할 여성을 물색하던 중 미성년자인 상대방 여성을 알게 되었고, 이후 상대방
여성을 만나서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후 상대방 여성에게 호감을
가져 교제를 제안하였고, 상대방 여성도 제안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간에 걸쳐 이어지던 연인관계는 미성년자인 상대방 여성의 부모님이 알게 되어
끝나게 되었는데, 이후 상대방 여성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신고

영장실질심사 재판에서도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시하고 상대방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

구속영장기각

20

2.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감형 사례분석



피고인의 주장

1. 반성하는 모습
2. 사건의 우발성
3. 전과 관계(증빙)
4.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없음
5. 증거부족 주장
6. 미성년자 연령 부인
7. 재범 가능성 낮음

감사합니다.

3.

한국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죄사건, 각 나라에게 물었다.

: 국가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기준 비교분석

강 선 혜(탁틴 ECPAT Korea 팀장)



한국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죄사건, 각 나라에게 물었다 :

국가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기준 비교분석

강선헤
탁틴내일 ECPAT Korea 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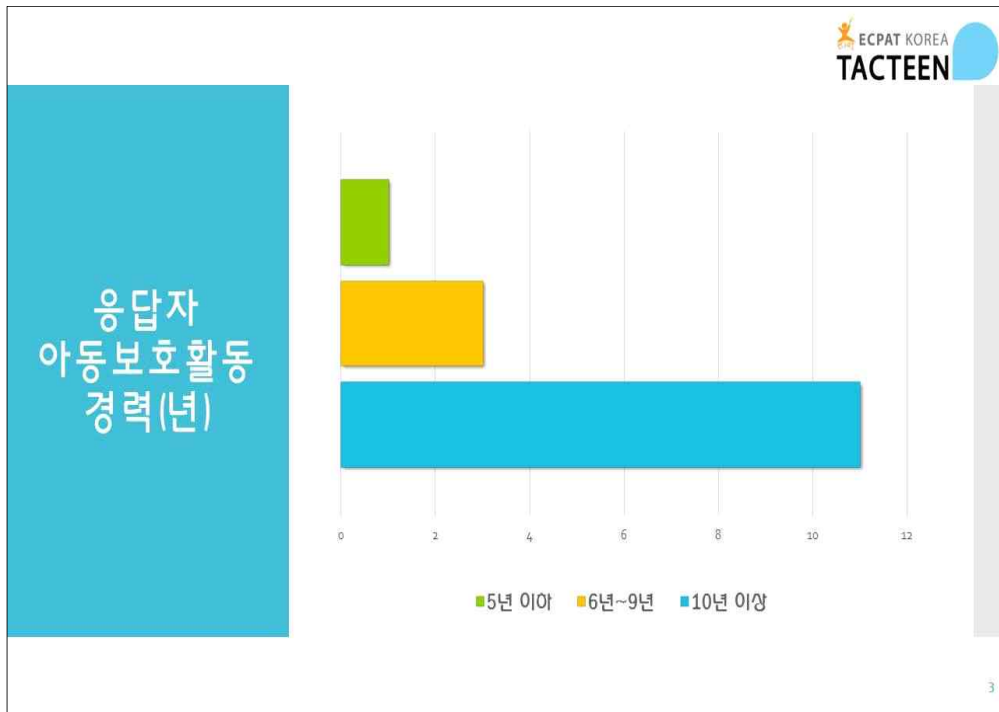
1



설문 참가국

 사모아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태국(F)	 룩셈부르크	 스리랑카
 스위스	 보츠와나	 모로코
 말라위	 케냐	 벨기에
 그리스	 독일	 오스트리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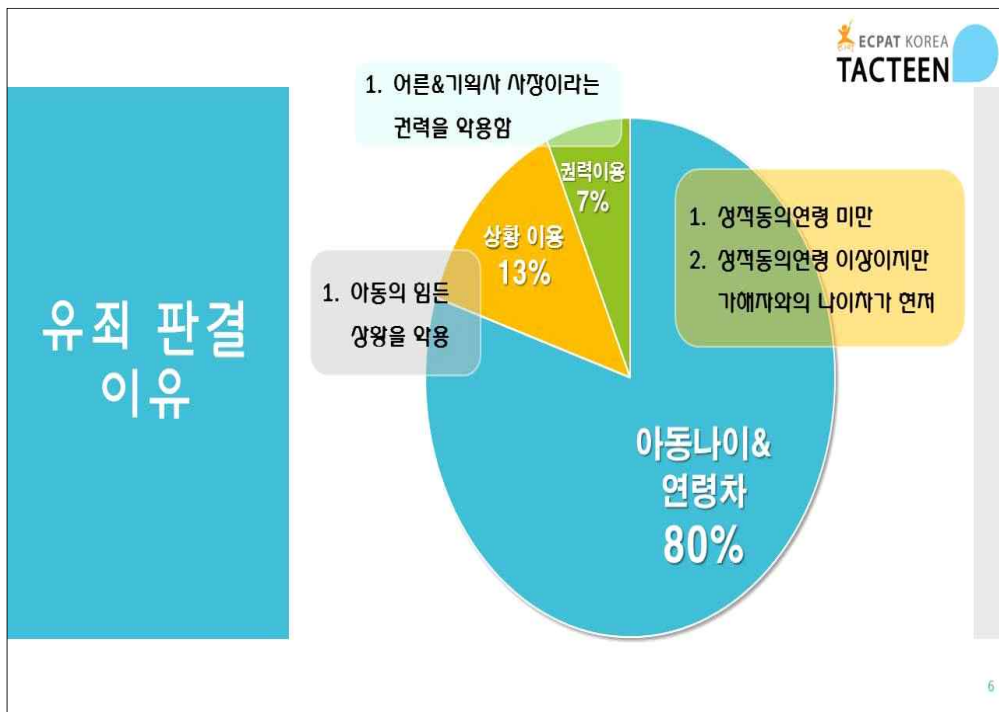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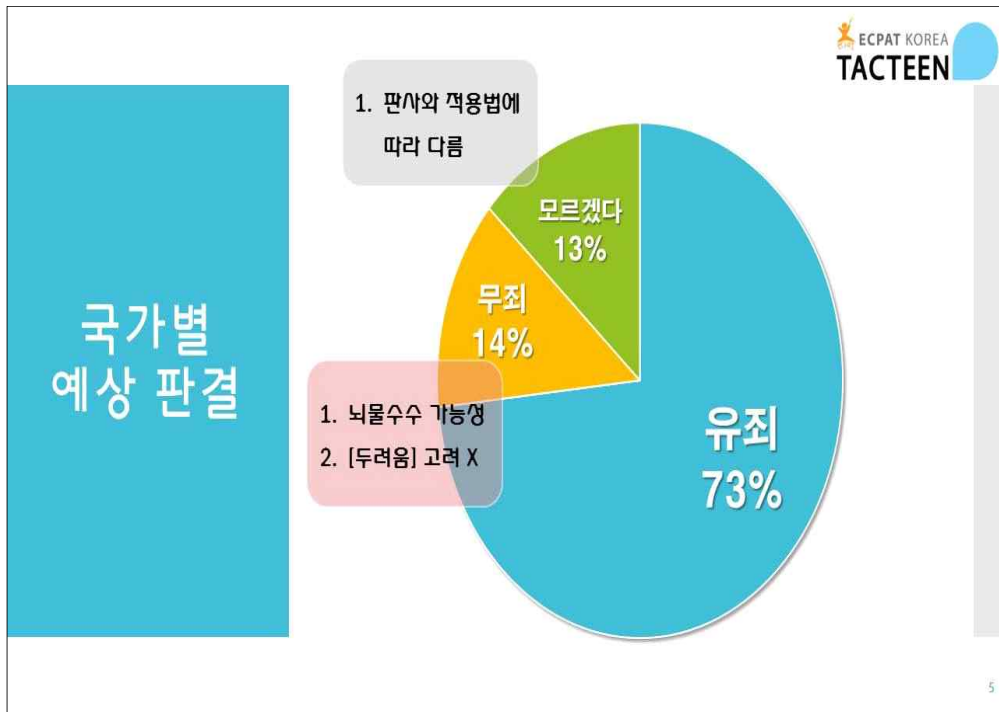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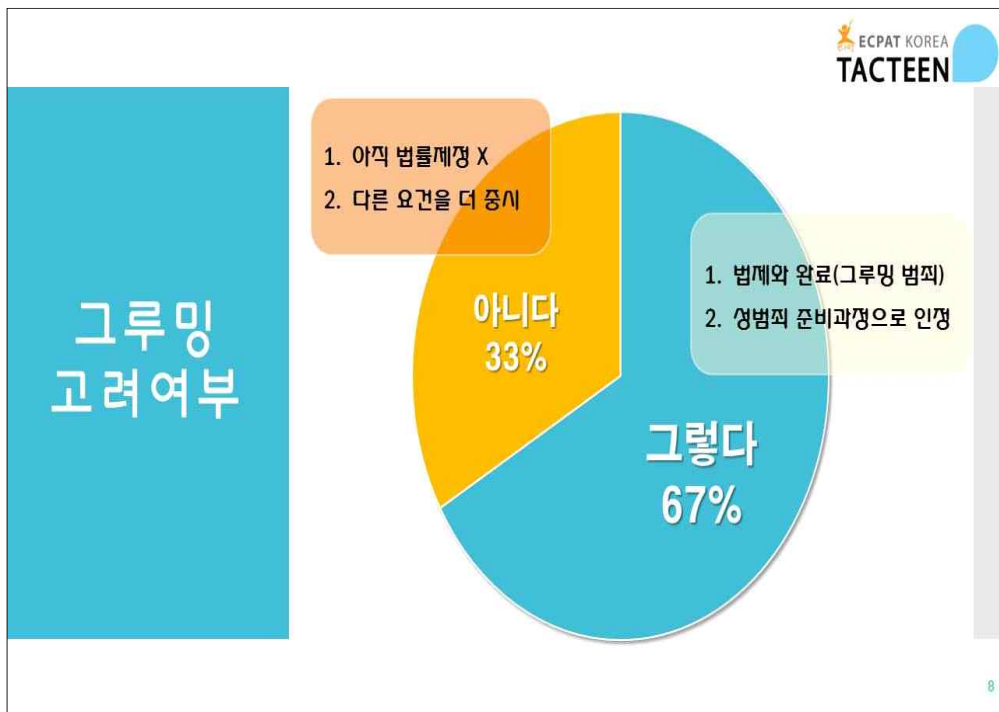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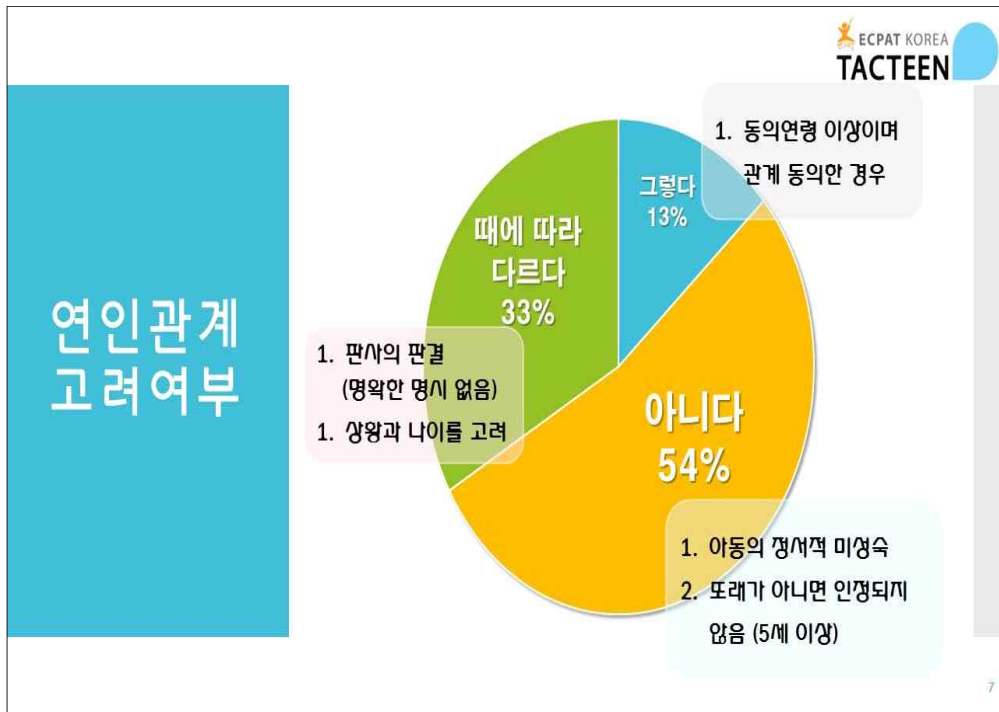
ECPAT KOREA
TACTEEN

설문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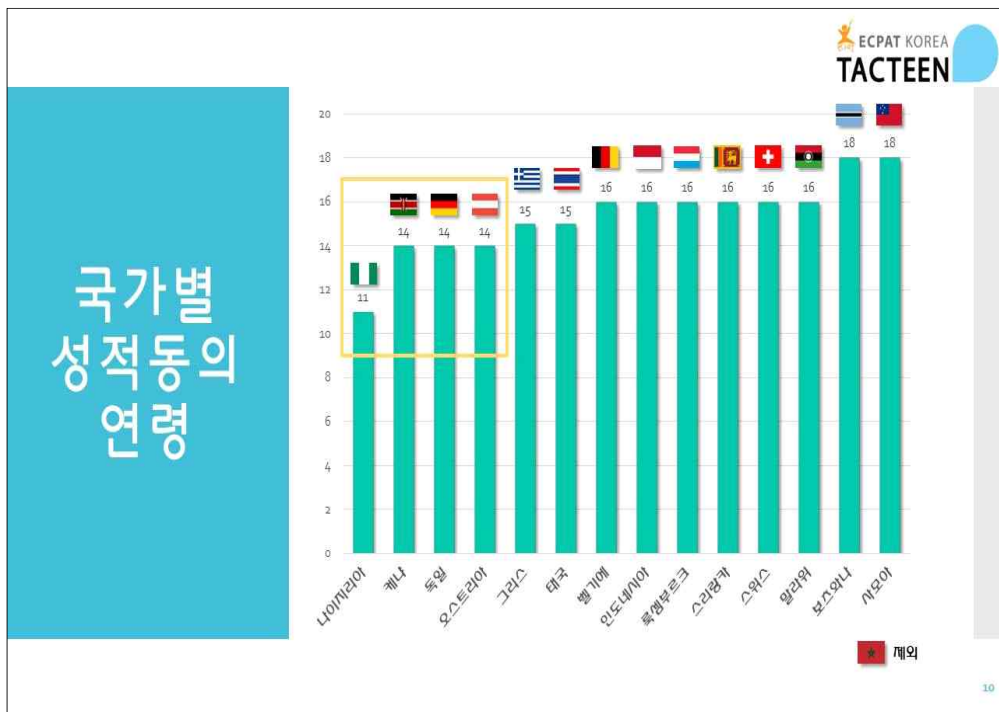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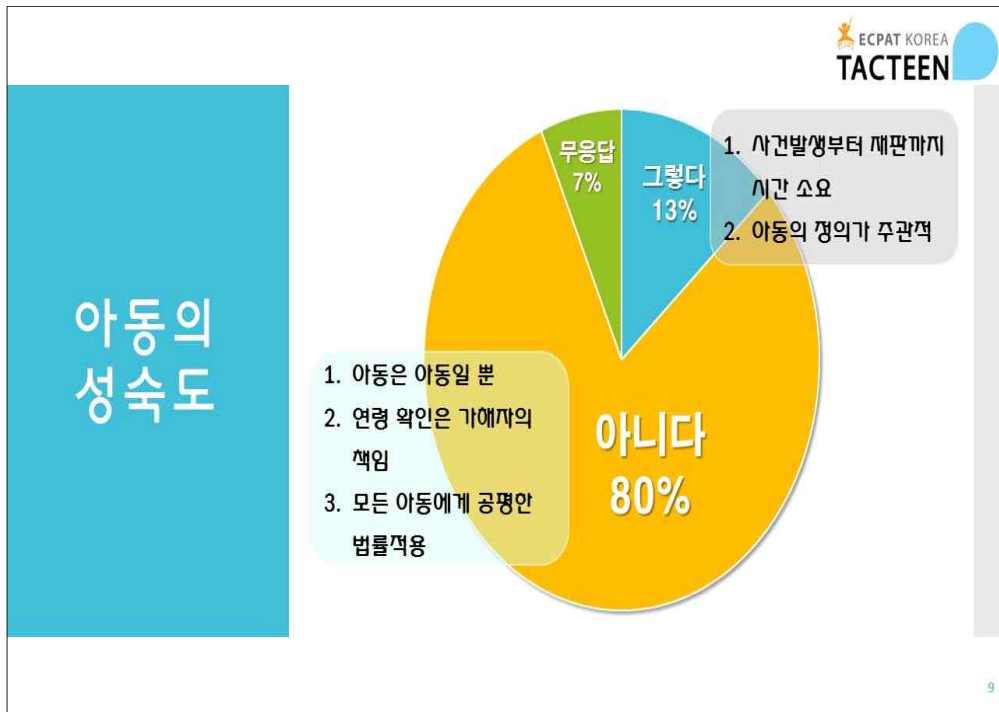
- 세계일보 & ECPAT Korea
-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의 여중생 성폭행 사건”
 - 사건개요
 - 법원 재판에서 확인된 사실
- 질의응답 (12문항)
 - 무죄/유죄 유무 & 이유
 - 각국 성적동의연령 & 기준 이유
 - 아동 성 착취 관련 법적 고려요소
 - 아동 성보호법 및 보호제도
- 유사 사례 & 판결 결과

4





3. 한국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죄사건, 각 나라에게 물었다.
(국가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기준 비교분석)



성적동의연령 초과아동을 위한 보호법안

• 나이지리아

- 16세 이하 아동 성 착취 금지
- 각 주마다 동의연령 달리 책정 -> 대부분 18세로 측정하는 추세

• 독일

- 14세 이상 아동에게 성행위를 대가로 어떠한 이득이 주어져서는 안되며 곤경 상태를 빌미로 성 착취를 행하는 것을 금지
- 21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이하 아동의 성적 동의 가능 유무를 이용하여 그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 처벌
- 신뢰관계 및 보호관계에 있는 아동과의 성행위 금지

• 오스트리아

- 14세~18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성 보호법 존재

• 벨기에

- 의제강간 연령 14세 / 성적동의연령 16세
- 14세~16세 아동의 경우 외설죄(indecent assault)
- 16세~18세 아동과의 대가성의 성행위 한 경우 처벌
- 16세~18세 아동의 성적동의 일정나이차 & 권력관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인정

11

로미오와 줄리엣 법

• ROMEO & JULIET LAW

- 청소년의 성적 자율권을 존중
- 연인관계이며 상호간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일정 연령차 이내에서만 인정
→미성년자-미성년자 / 미성년자-성인

• 워싱턴 주법(State Law) [성적동의연령 16세]

- 12세 미만 아동이 2살 차이 이내의 미성년자와 성 관계한 경우 (직접적 성기삽입이 없는 경우 3살 차이까지 인정)
- 12세~13세 아동이 3살 차이 이내 미성년자와 성 관계한 경우 (직접적 성기삽입이 없는 경우 4살 차이까지 인정)
- 14세~15세 아동이 4살 차이 이내의 타인과 성 관계한 경우

➡ **아동의 보호와 성적 자율권 보장**

12



그루밍

- **인도네시아**
 - 설득에 의한 성범죄 또한 범죄로 정의
- **룩셈부르크**
 - 2011년 이후부터 범죄로 인정
 - 경찰 신고 5년~6년 → 더 무거운 판결 시작
- **스리랑카, 스위스**
 - 성범죄 발생한 경우 성범죄 준비과정으로 인정
- **케냐**
 -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6)에 명시
- **벨기에**
 - 아동 대상 성범죄 발생 전 성인(가해자)가 성관계를 맺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접근하여 그를 위한 행동(그루밍)을 한 경우 두 배의 처벌
- **오스트리아**
 - 그루밍 방지법 존재 (Initiation of Sexual Contact with Underage = younger than 14 years)

33



각국 의견

- **인도네시아**
 - “아동은 성범죄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아동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범죄억제 효과를 위해서라도 매우 강한 처벌 혹은 거액의 보상금 지급 등 추가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가해자들을 성범죄자로 등록해 그가 이동할 경우 경찰이 주시하여 추가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스위스**
 - “16세~18세 아동도 모두 보호받아야 한다.”
- **보츠와나**
 - “무고죄는 아동 성착취 사례에서 많이 발생한다. 가해자가 본인의 무고를 주장하며 아동이 거짓말로 성인에게서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며 물아가기 때문이다. 아동 친화적인 법원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아동은 법정에서 가해자를 다시 마주해야 한다.”
- **모로코**
 - “15세 사춘기 여자아이인 피해자는 가해자와 사랑에 빠졌다 착각했을 수도 있고, 성에 대한 호기심이 생길 나이이다. 그것은 아동의 나이에서 자연스러운 것이고 범죄가 아니다. 가해자는 아동의 특성을 본인의 성적 쾌락을 위해 이용하고 통제하였다.”
 - “피해 아동이 현재 겪는 어려움은 한국의 아동 보호단체 및 사회단체의 부재로 느껴진다.

34

4.

International standards of age of consent and
global action against child grooming

(성적동의연령의 국제기준과 그루밍 범죄에 대한 국제기구의 조치)

Thomas Muller(ECPAT International Deputy Executive)



1.	About ECPAT
2.	Child Sexual Exploitation Material (CSEM) - Scale
3.	CSEM – What is it?
4.	Access to CSEM
5.	How to address the problem



1. About ECPAT

2. Child Sexual Exploitation Material (CSEM) - Scale

3. CSEM – What is it?

4. Access to CSEM

5. How to address the problem



A global network of civil society organis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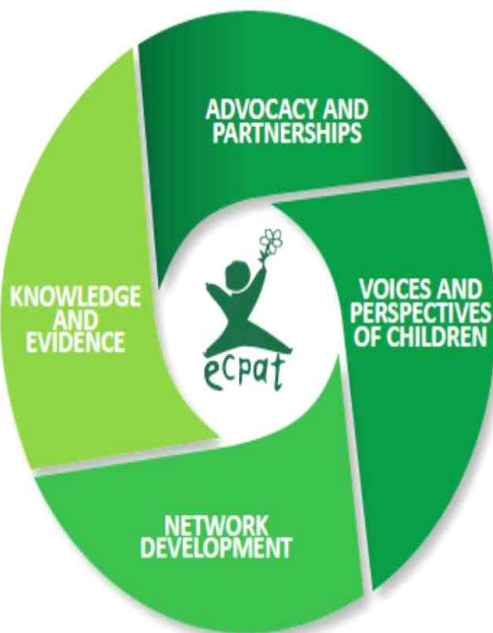
ENDING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113 CSOs in 98 Countries



1 Common Vision

Ending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Our strategy to
end child sexual
exploitation



Research

<https://www.ecpat.org/resources>

ECPAT
advocacy



Children experience sexual exploitation in various forms

- Sexual Exploitation through Prostitution
- Online Child Sexual Exploitation
- Sexual Exploitation in Travel and Tourism
- Trafficking for sexual purposes
- Humanitarian Settings
- Child Marriage


ENDING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1. About ECPAT
2. Child Sexual Exploitation Material (CSEM) - Scale
3. CSEM – What is it?
4. Access to CSEM
5. How to address the problem





During the sexual liberation movement during the late 1960s and 70s Child abuse material was sold together with adult pornography over the counter.

1960s

—

1970s

- Decade of madness



As a result of the decline in commercial child pornography, the principal Federal agencies responsible for enforcing laws covering the distribution of child pornography – the U.S. Customs Service and the U.S. Postal Service – do not consider child pornography a high priority.

up to
1982

- Many governments started passing stronger legislations
- CSEM was very hard to find







Home Office INTERPOL

Year zero of the modern Internet 1995

- Greater Manchester Police seized 12 images of child sexual abuse
- UK police knew of 7000 images of CSA
- Interpol knew 4000 images of CSA



Just a few hundred children were depicted. That's in the whole of recorded history up to that point and across the entire pla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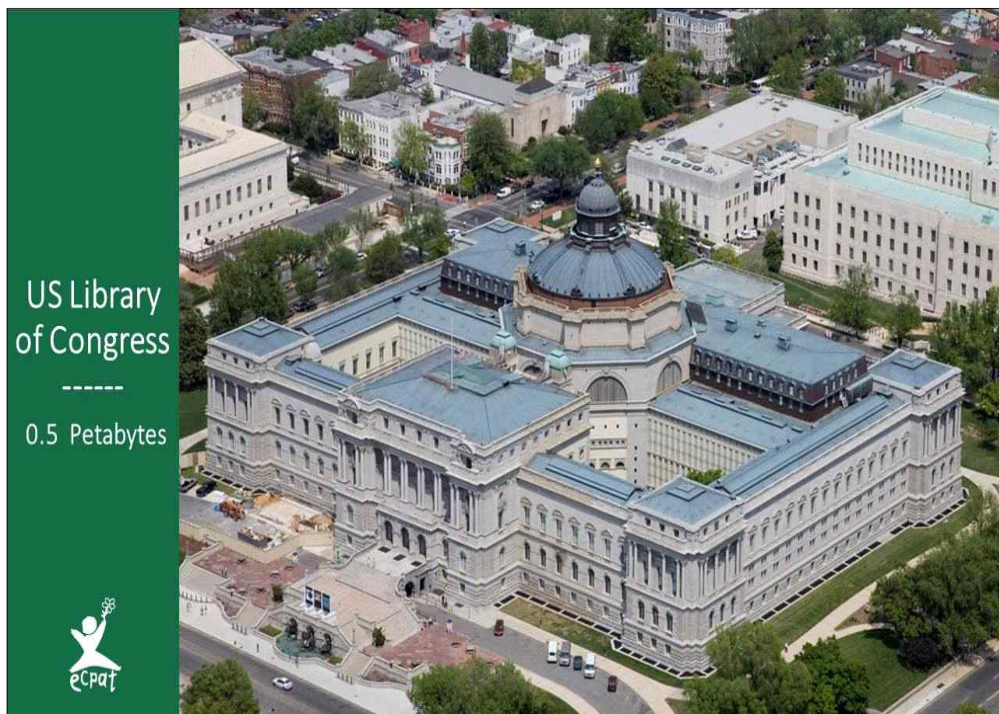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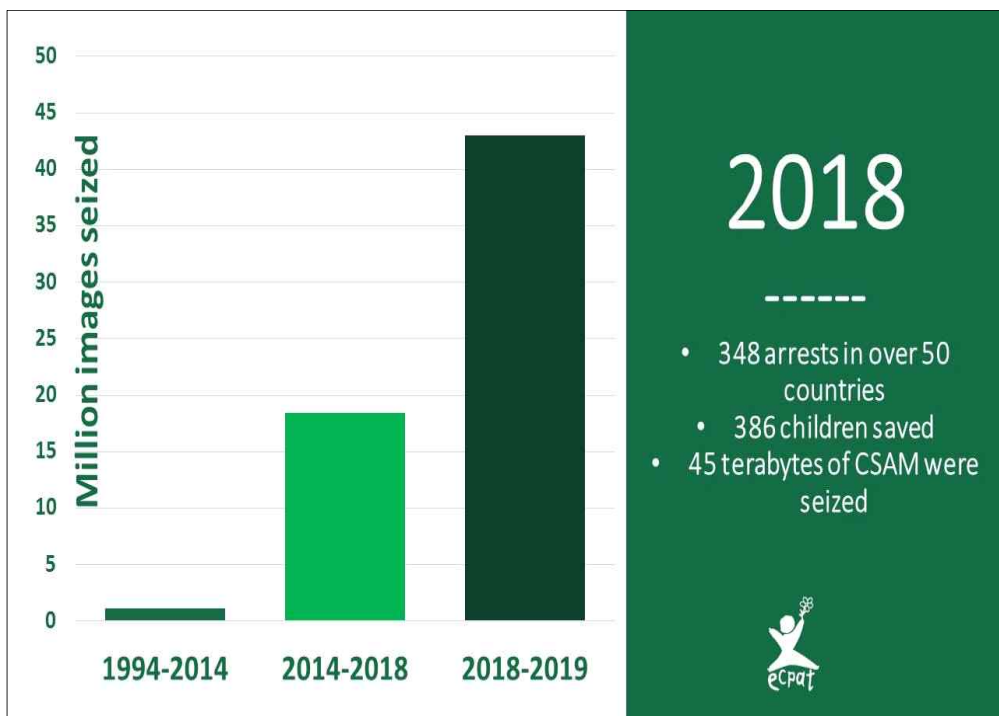
NSPCC
Cruelty to children must stop. FULL STOP.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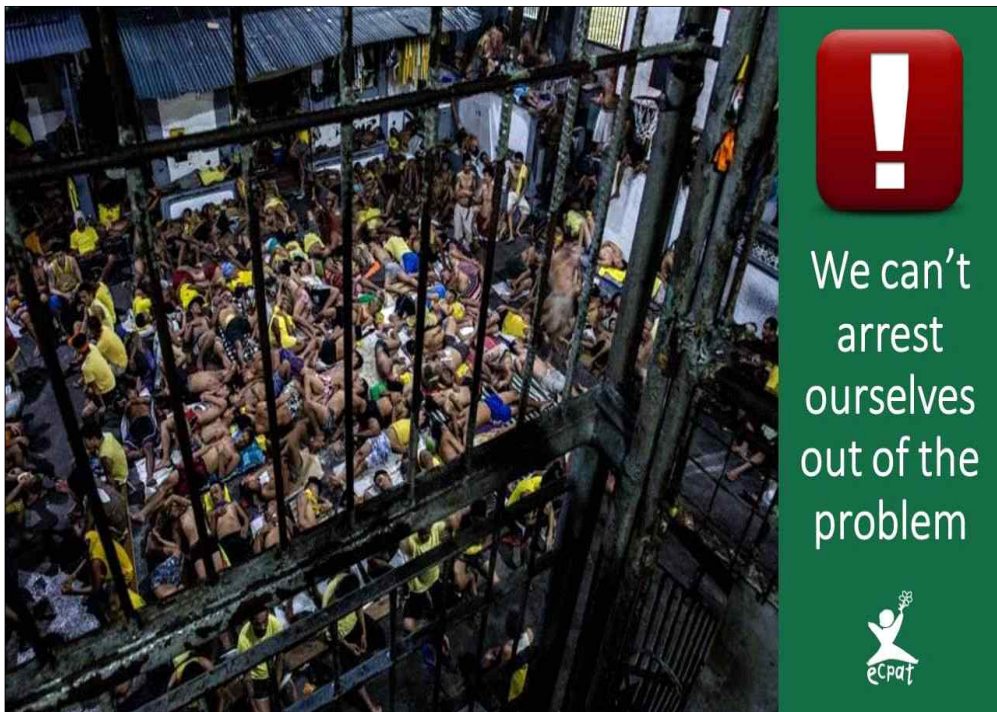
- Freedom of information request to all 43 Police Forces in England and Wales
- 5 forces replied to the surv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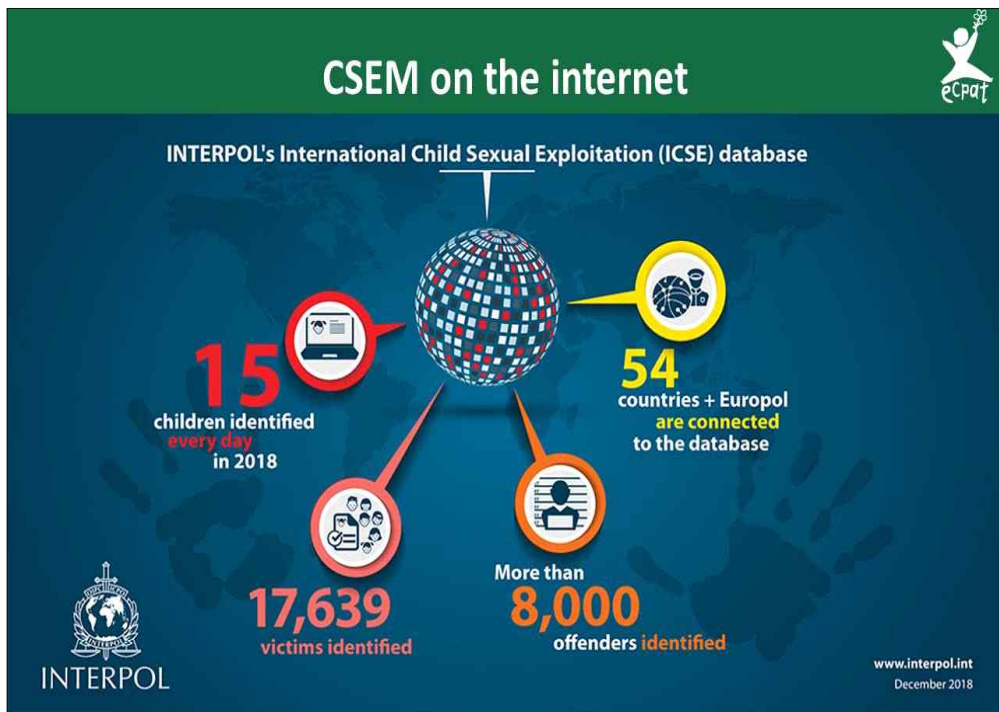
Police Force	Images Seized	Population
Cambridgeshire	17,162,489	789,700
Dyfed-Powys	633,703	506,100
Humberside	1,466,952	921,200
Lincolnshire	6,500,000	703,000
Nottinghamshire	213,425	1,086,600
Totals	25,976,569	4,006,600
England & Wales		55,240,500
Exchanging CSEM on Peer2Peer networks in the UK		50,000 – 80,000



4. International standards of age of consent and global action against child grooming
(성적동의연령의 국제기준과 그루밍 범죄에 대한 국제기구의 조치)



1. About ECPAT	
2. Child Sexual Exploitation Material (CSEM) - Scale	
3. CSEM – What is it?	
4. Access to CSEM	
5. How to address the problem	



4. International standards of age of consent and global action against child grooming
(성적동의연령의 국제기준과 그루밍 범죄에 대한 국제기구의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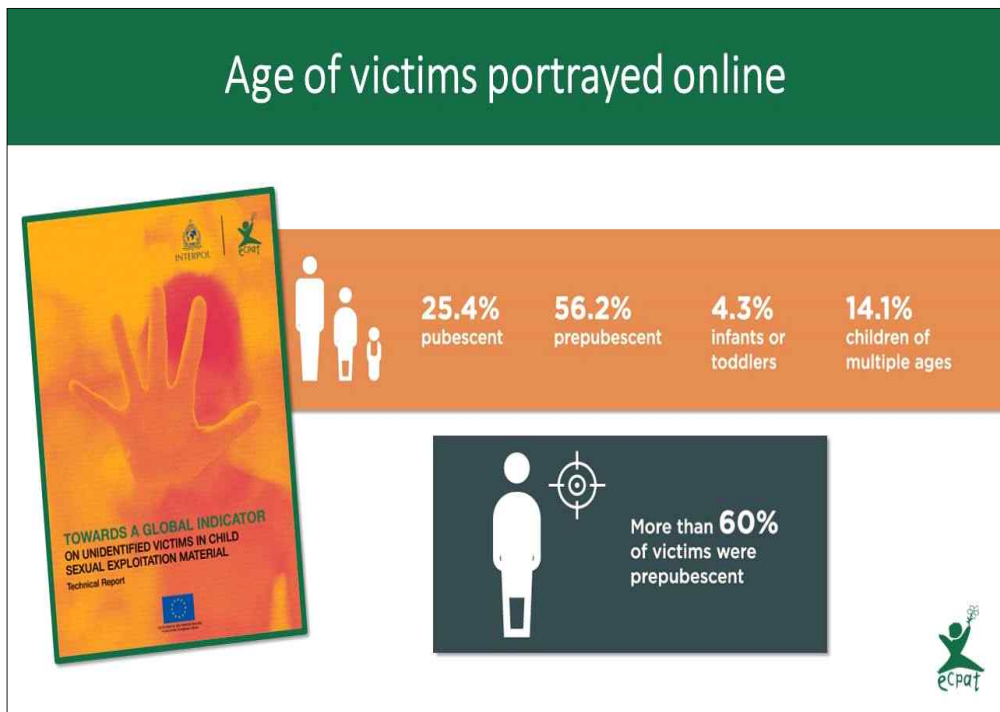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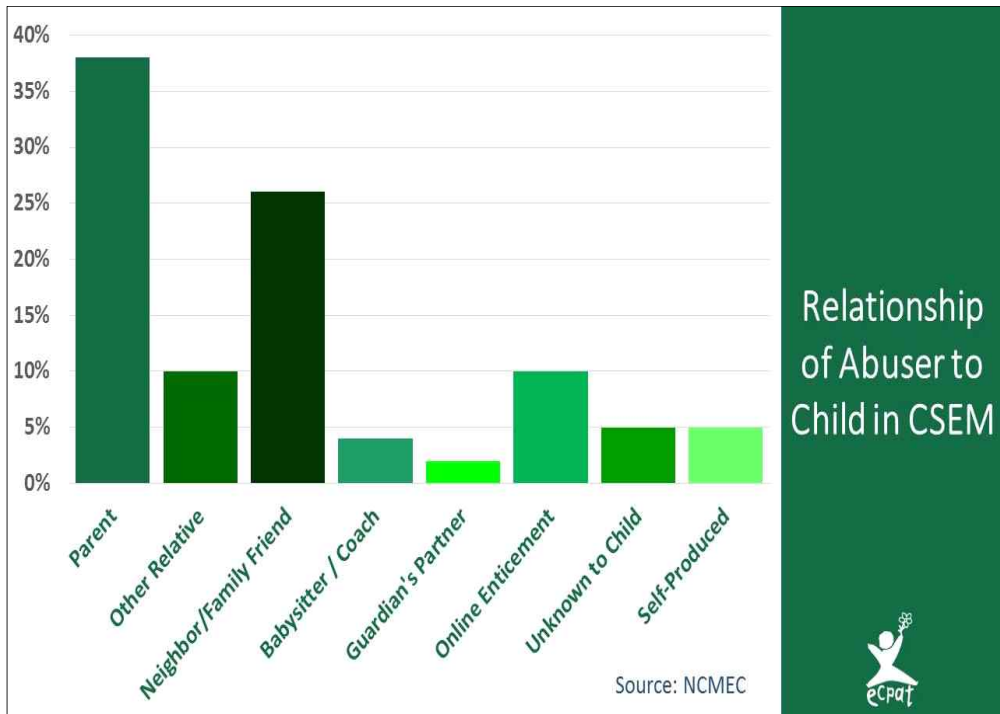
The COPINE scale		
1	Indicative	Non-erotic and non-sexualised pictures showing children in their underwear, swimming costumes from either commercial sources or family albums. Pictures of children playing in normal settings, in which the context or organisation of pictures by the collector indicates inappropriateness.
2	Nudist	Pictures of naked or semi-naked children in appropriate nudist settings, and from legitimate sources.
3	Ero	Surreptitiously taken photographs of children in play areas or other safe environments showing either underwear or varying degrees of nakedness.
4	Posing	Deliberately posed pictures of children fully clothed, partially clothed or naked (where the amount, context and organisation suggests sexual interest).
5	Erotic Posing	Deliberately posed pictures of fully, partially clothed or naked children in sexualised or provocative poses.
6	Explicit Erotic Posing	Pictures emphasising genital areas, where the child is either naked, partially clothed or fully clothed.
7	Explicit Sexual Activity	Pictures that depict touching, mutual and self-masturbation, oral sex and intercourse by a child, not involving an adult.
8	Assault	Pictures of children being subject to a sexual assault, involving digital touching, involving an adult.
9	Gross Assault	Grossly obscene pictures of sexual assault, involving penetrative sex, masturbation or oral sex, involving an adult.
10	Sadistic/Bestiality	a. Pictures showing a child being tied, bound, beaten, whipped or otherwise subject to something that implies pain. b. Pictures where an animal is involved in some form of sexual behaviour with a chi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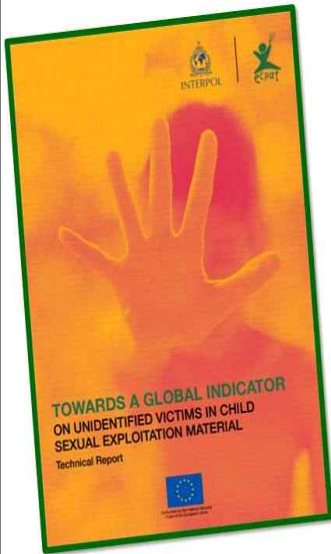
Unidentified Victims in Child Sexual Exploitation Material

**ENDING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TOWARDS A GLOBAL INDICATOR
ON UNIDENTIFIED VICTIMS IN CHILD
SEXUAL EXPLOITATION MATERIAL**
Technical Report



Increase in severity of abuse and violence depic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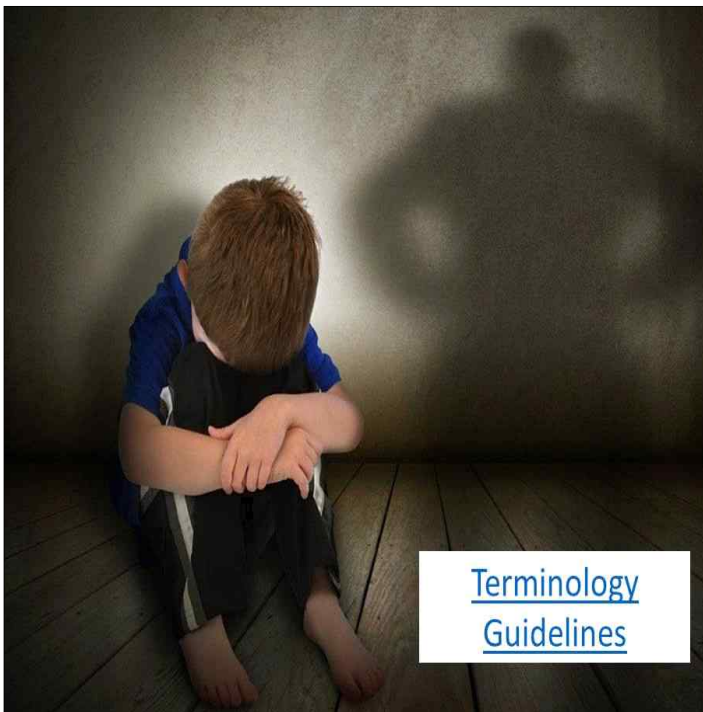
Boys more likely to feature in **extreme** imagery (COPINE level 7-10)



Girls more likely to be represented in imagery depicting **moderate** victimisation (COPINE level 4-6)



The younger the victim, **the more severe** the abuse depic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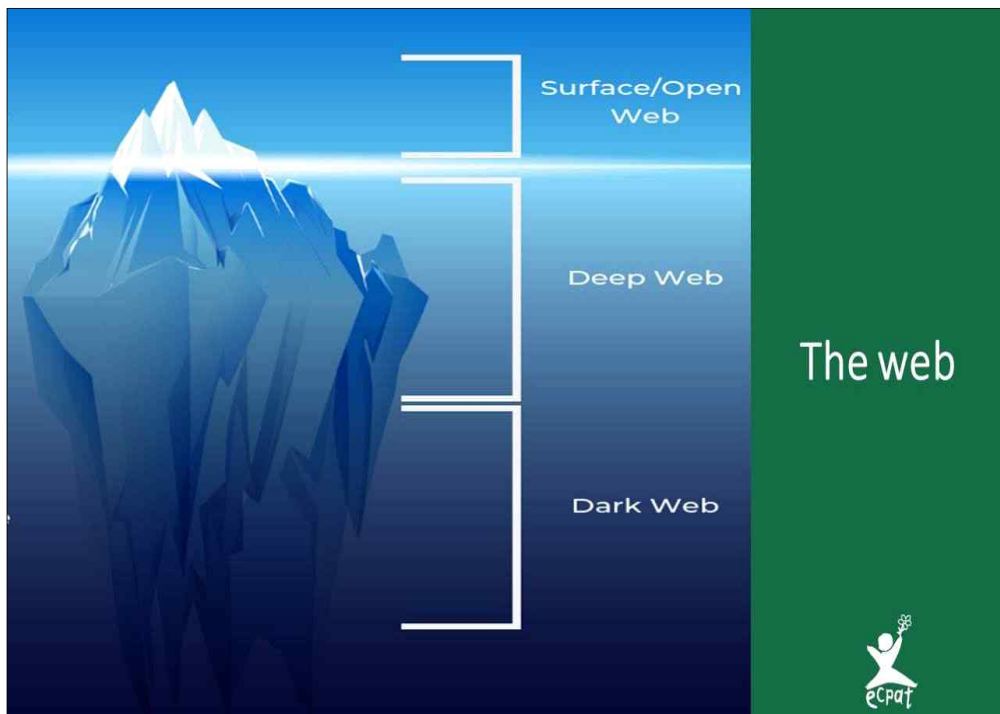


Unspeakable
crimes against
the most
vulnerable

[Terminology](#)
[Guidelin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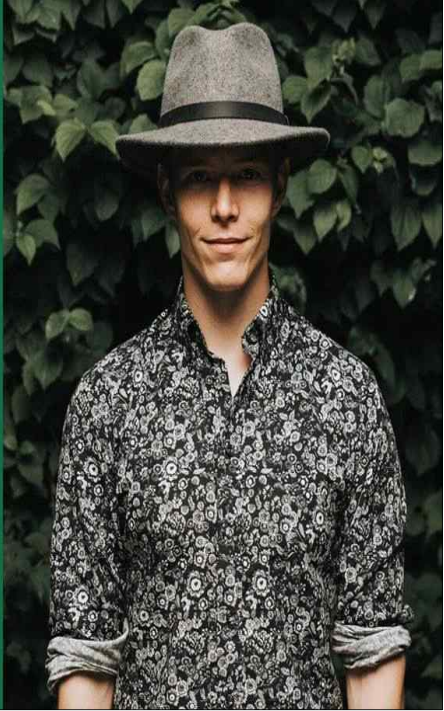
1. About ECPAT	
2. Child Sexual Exploitation Material (CSEM) - Scale	
3. CSEM – What is it?	
4. Access to CSEM	
5. How to address the problem	



Einar Otto Stangvik

- Norwegian Hacker
- Unveiled Child's Play
- CSAM is just a google search away
- Search engines are the gateway for first time consum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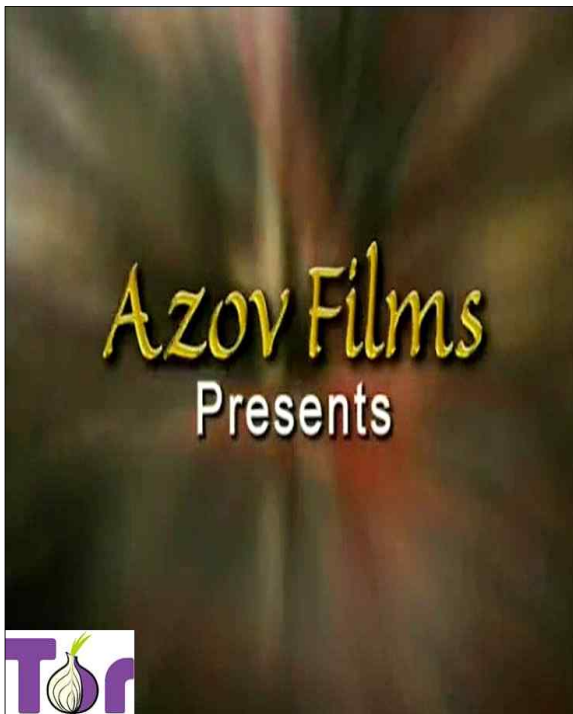


Clear Web

- Twitter responsible for half of CSEM UK investigators found on web platforms
- Numbers exclude closed groups and messengers







DeepWeb azovfilms.com

- Hosted in Canada
- 348 arrests in over 50 countries
 - 386 children saved
- 45 terabytes of CSAM were seiz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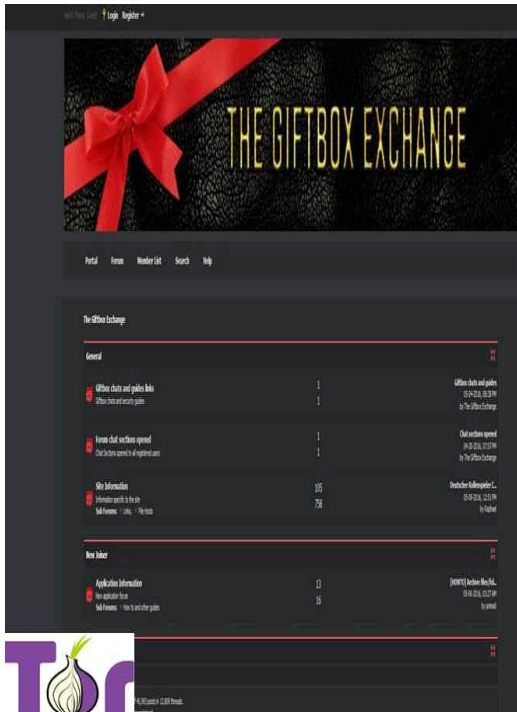


DeepWeb Child's Play

- Hosted in Canada
- Was run by AFP for 11 months
 - Arrests in 38 countries
 - 250,000 videos uploaded
 - Over a million downloa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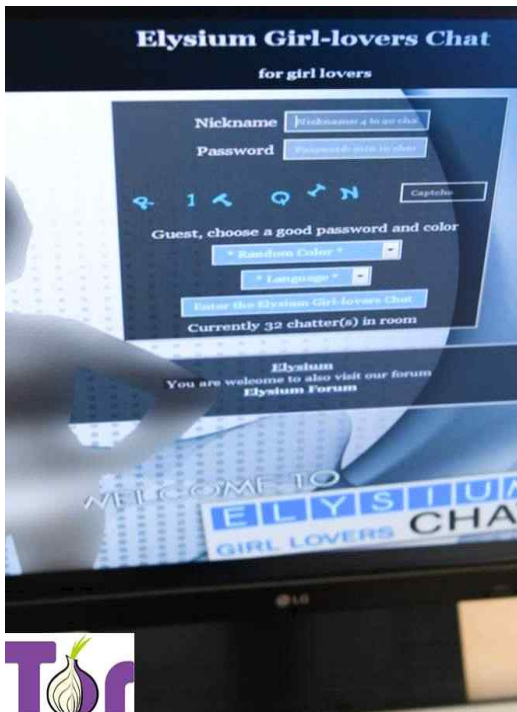
4. International standards of age of consent and global action against child grooming
(성적동의연령의 국제기준과 그루밍 범죄에 대한 국제기구의 조치)



DeepWeb Giftbox Exchange

- Hosted in USA
- 72.000 registered users
 - 56.000 posts
- Babies & Toddlers section
 - Taken over by AFD
- Led to discovery of Elysium





DeepWeb Elysium

- Hosted in Germany
- 110.000 registered users
- Led to review of communication privacy laws in Germany



Welcome to video

Upload videos

Description or keyword:

At least 15MB, Max 1900MB also selectable up to 10 videos

No files selected.

Note:
Click the button only once.
Wait for message to success upload.
Do not upload **adult porn** over the age of **15**

© NCA



DeepWeb

Welcome to Video

- Hosted in South Korea
- Arrests in 38 countries
- 250,000 unique videos uploaded
 - 50% unknown CSEM
 - 8 terabytes seized
- Over a million downloads



1.	About ECPAT
2.	Child Sexual Exploitation Material (CSEM) - Scale
3.	CSEM – What is it?
4.	Access to CSEM
5.	How to address the problem



- Freedom of speech is not freedom of reach
- We try not to give people with the most extreme, antisocial opinions and intentions an opportunity to reach into the homes of every third household in the world, but we do give pedophiles a free platform to target their victims
- Companies are happy to develop software that prevents spam and malware, however when it comes to child abuse they don't scan.
- No end-to-end encryption of messengers services.
- Ensure age verification for content



The role of the private sector



We need to follow the money







Police work
needs to
change
radically

- Reverse investigation. From footage of the crime to finding crime scene, victim and perpetrator
- Police is territorial, in charge of a community and paid by their taxes – the problem is global (we need more money because we are going to save children around the world)
- Break down the borders built into the police work and budget
- Police need new skills and equipment
- What ethical boundaries are you going to cross and how do you ensure you are not going too far



Today's
laws
are not
appropriate

- Laws need to keep up with the way offenders operate and use technology
- Cryptocurrency exchanges need to collect customer information and verify identities
- Possession of CSEM needs to be illegal
- Production and distribution needs to be punished appropriately
- The fact that offenders network and use TOR to hide, needs to be illegal
- Producing and sharing of information on how to defeat Law Enforcement needs to be illegal
- Laws need to regulate and empower police work

Thank you very much



Thomas Mueller
Deputy Executive Director
ECPAT International
Thomasm@ecpat.net



아동 성 착취 근절

SEOUL, 28 NOVEMBER 2019



청소년과 함께 꿈꾸는
탁틴내일

1. ECPAT 소개
2. 아동 성 착취물 CSEM(Child Sexual Exploitation Material) - Scale
3. CSEM 란?
4. CSEM의 사용
5. 문제 해결방안



1. ECPAT 소개

2. 아동 성 착취물 CSEM(Child Sexual Exploitation Material) - Scale

3. CSEM 란?

4. CSEM의 사용

5. 문제 해결방안



시민사회단체 글로벌 네트워크



ENDING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98개국 113개 단체



1 공통 비전

아동 성착취 근절



아동성착취 근절을 위한 전략



4. International standards of age of consent and global action against child grooming
(성적동의연령의 국제기준과 그루밍 범죄에 대한 국제기구의 조치)



연구



ECPAT
성명활동





**아동이 경험하는
다양한 형태의 성착취**

성매매를 통한 아동성착취

온라인 아동 성착취

여행&관광에서의 아동 성착취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

열악한 환경 속의 아동

아동 결혼식

1. ECPAT 소개

2. **아동 성 착취물 CSEM(Child Sexual
Exploitation Material) – Scale**

3. CSEM 란?

4. CSEM의 사용

5. 문제 해결방안





성적 자율권 운동이 일어났던
1960년 후반부터 1970년 동안에는
아동학대물(영상, 사진 등)이 성인
포르노와 함께 가게 카운터에서
판매되었다

1960s

—

1970s

- 광기의 10년



상업적 아동 포르노의 감소로 인해
관련 법을 시행해야 하는 중요
정부기관들 (미국 관세청, 미국
우체국 등)이 아동 포르노를 중요
우선사항으로 고려하지 않음

~1982

- 정부들이 강한 법률을 시행하기
시작
- 아동 성착취물은 찾기 어려워짐





Home Office INTERPOL



약 몇 백의 아동들이 영상에 사용됨.
1995년까지 제작된 전세계 모든
영상을 통합하면 약 몇 백의
아동들만이 영상에 사용되었음

현대 인터넷의 시작 1995

- 그레이터 맨체스터 경찰이 12개의 아동 성학대 사진을 적발
- 영국 경찰은 7000개의 아동 성착취 영상에 대해 인지
- 국제경찰은 4000개의 아동성착취 영상에 대해 인지



NSPCC

Cruelty to children must stop. FULL ST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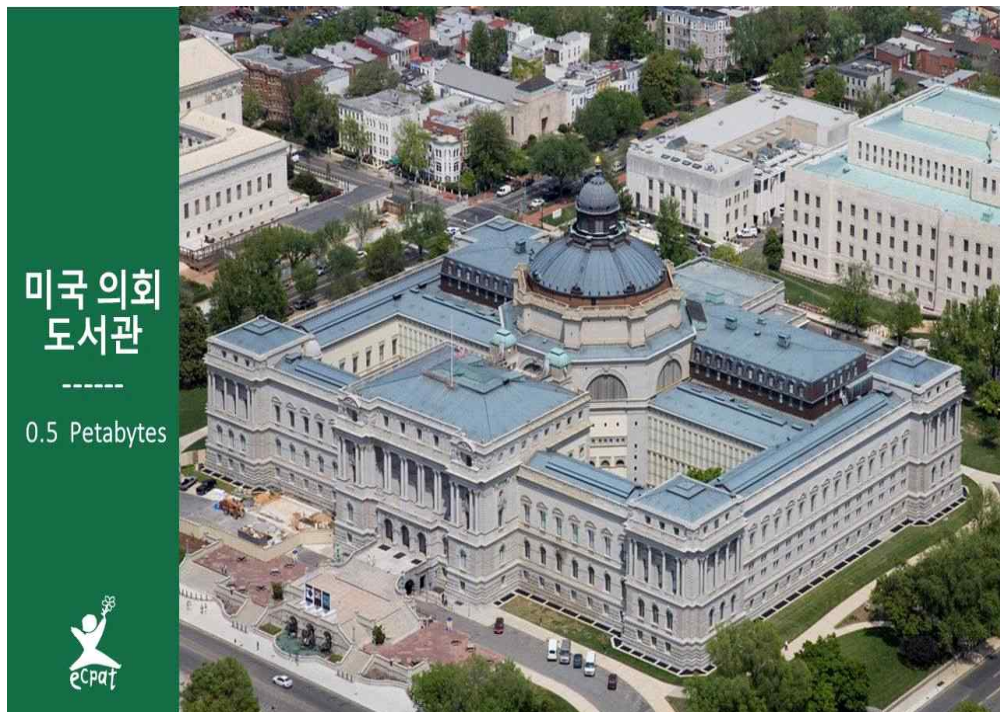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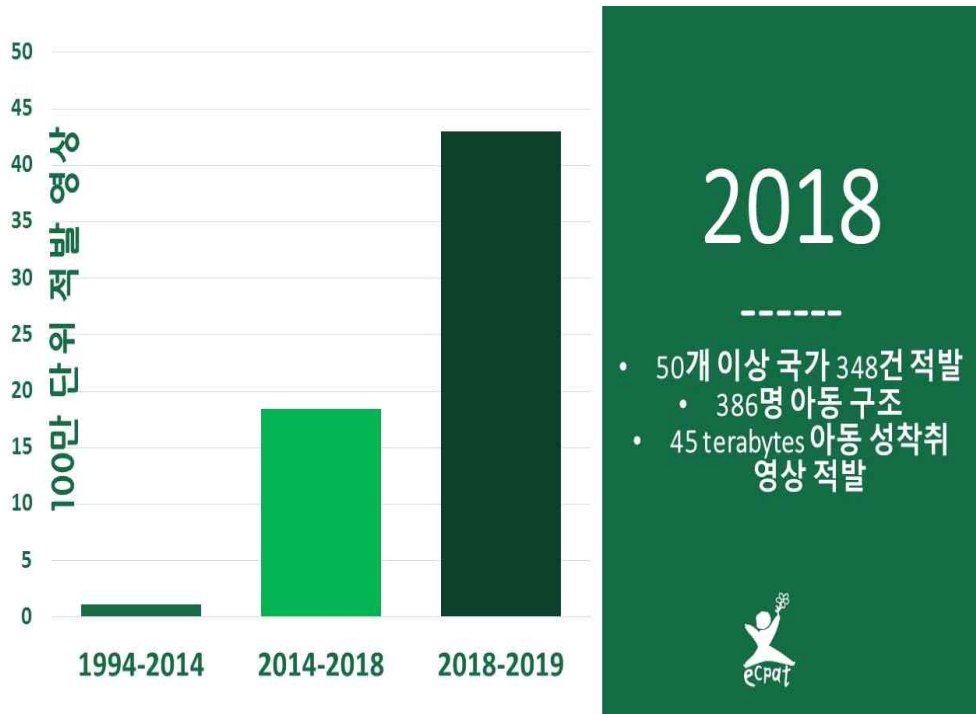
경찰	적발 영상	명수
Cambridgeshire	17,162,489	789,700
Dyfed-Powys	633,703	506,100
Humberside	1,466,952	921,200
Lincolnshire	6,500,000	703,000
Nottinghamshire	213,425	1,086,600
합 계	25,976,569	4,006,600
England & Wales		55,240,500
영국 내 또래 간 공유된 아동성착취물		50,000 – 80,000

2012

- 영국과 웨일즈 43개 경찰 기관에 정보 공개 요청
- 5개 기관이 설문조사 응답



4. International standards of age of consent and global action against child grooming
(성적동의연령의 국제기준과 그루밍 범죄에 대한 국제기구의 조치)





1. ECPAT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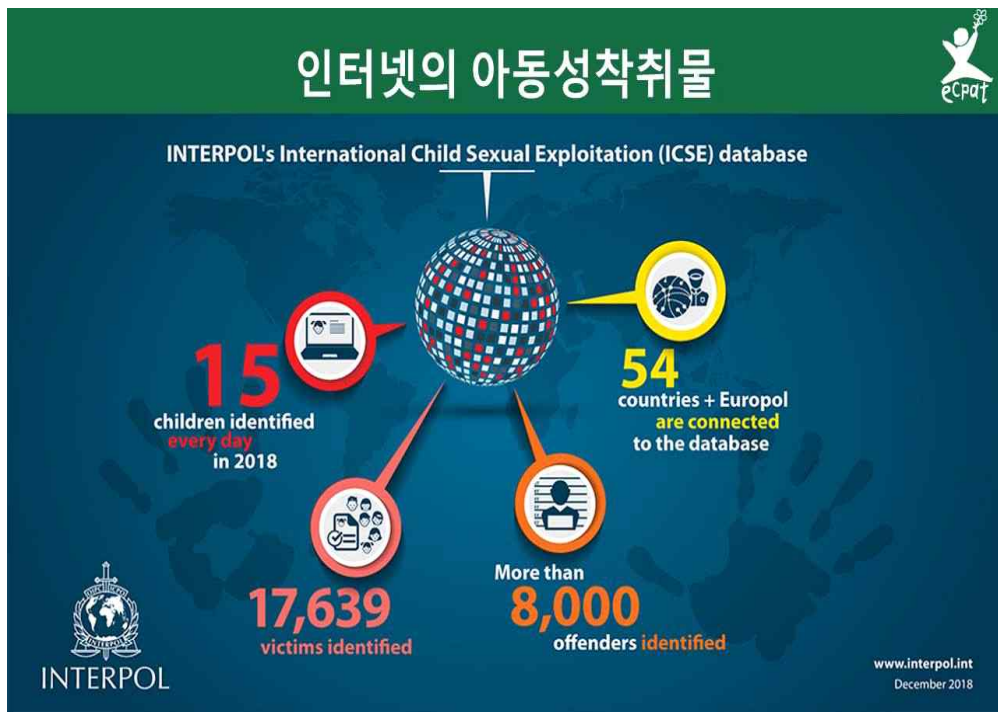
2. 아동 성 착취물 CSEM(Child Sexual Exploitation Material) - Scale

3. CSEM 란?



4. CSEM의 사용

5. 문제 해결방안



The COPINE scale (평가도구)

1	암시적	상업자료 혹은 가족앨범에서의 에로틱하거나 성적이지 않은 아동의 속옷, 수영복 차림 사진 보통 환경에서 아동이 입고 있는 장면이지만 수집가에 의해 불건전하게 보여질 수 있는 사진
2	나체	합법적인 자료 출처이며, 적절한 환경에서의 나체 혹은 반나체의 아동
3	에로틱	놀이터 혹은 다른 안전한 장소에서 입고 있는 아동의 속옷이나 맨 살이 드러나는 몰래 촬영된 사진
4	포즈	옷을 모두 입거나, 부분적으로 입거나, 나체인 아동이 의도적으로 자세를 취한 사진(내용 혹은 주변 환경이 성적인 흥분을 나타내는 사진)
5	성적인 포즈	옷을 모두 입거나, 부분적으로 입거나, 나체인 아동이 의도적으로 성적이거나 자극적인 자세를 취한 사진
6	노골적으로 성적인 포즈	옷을 모두 입거나, 부분적으로 입거나, 나체인 아동의 성기부분을 강조하는 사진
7	노골적으로 성적인 행위	성인을 제외한 아동의 성적 접촉, 자위행위, 구강성행위, 삽입행위 등을 나타내는 사진
8	폭력	아동이 성인에게 디지털 상의 접촉을 포함하여 성폭력을 당하는 장면이 포함된 사진
9	극도의 폭력	삽입을 포함한 성행위, 자위, 구강성행위 등 성인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극도로 외설적인 성폭력 장면이 포함된 사진
10	가학적/수간	a. 아동이 묶이거나, 속박되거나, 맞거나, 채찍질 당하거나, 기타 다른 고통을 암시하는 행위가 보여지는 사진 b. 아동과 동물의 성적인 행위가 보여지거나 암시되는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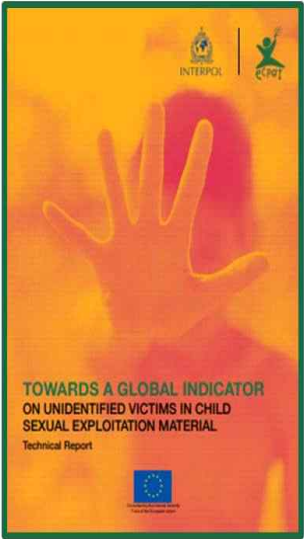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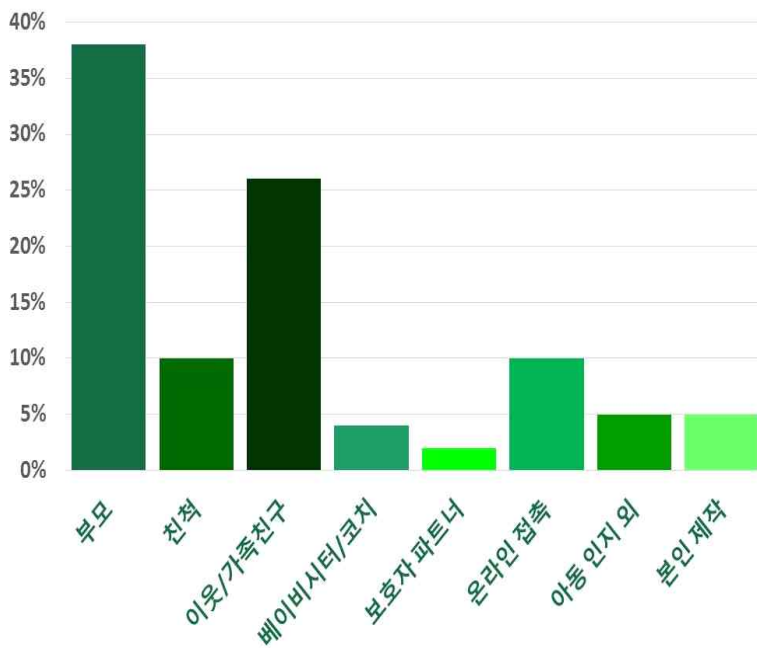
아동 성착취물의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들



ENDING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4. International standards of age of consent and global action against child grooming
(성적동의연령의 국제기준과 그루밍 범죄에 대한 국제기구의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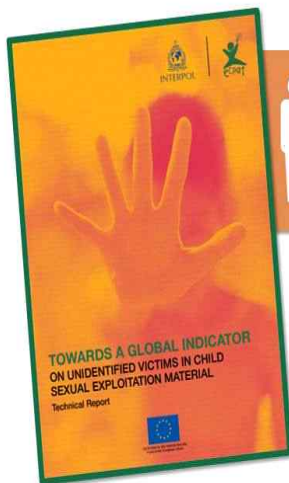


Source: NCMEC

아동성착취물
가해자와
아동의 관계



온라인 영상 피해자 나이



25.4%
사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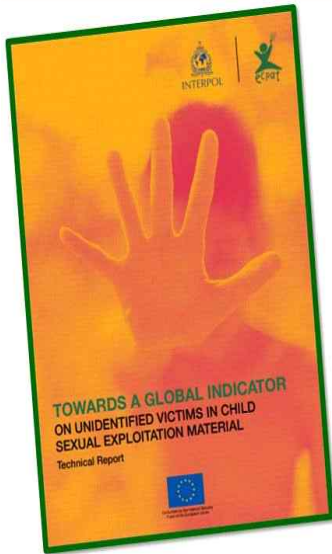
56.2%
사춘기 이전

4.3%
영유아

14.1%
다양한 나이



영상 내 학대 및 폭력의 심각성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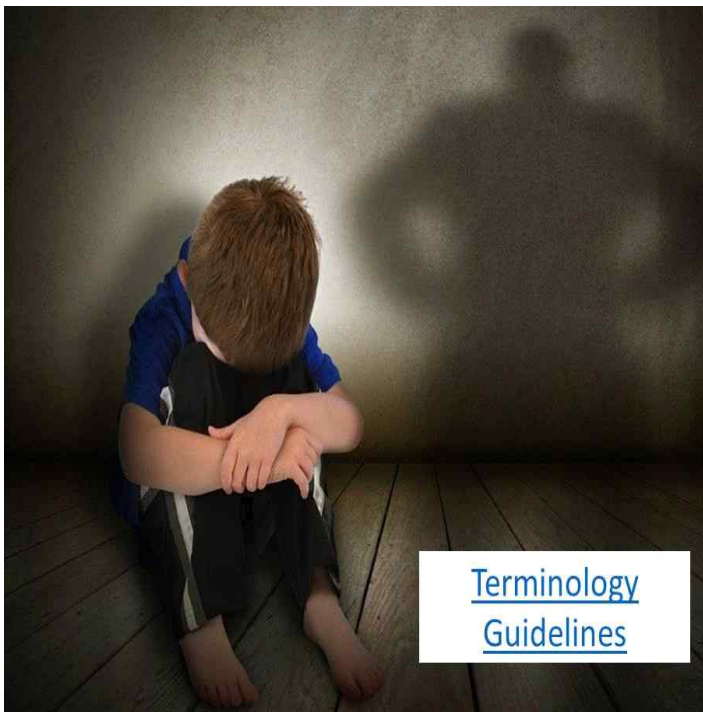
남자아이가 극단적인 영상에 이용될 확률이 더 높음(COPINE level 7-10)



여자아이가 보통정도의 피해를 묘사하는 영상에 이용될 확률이 더 높음 (COPINE level 4-6)



피해자가 어릴수록 더 심각한 학대가 묘사됨



[Terminology](#)
[Guidelines](#)



가장 취약한
대상에게
가해지는
말할 수 없는
범죄



1. ECPAT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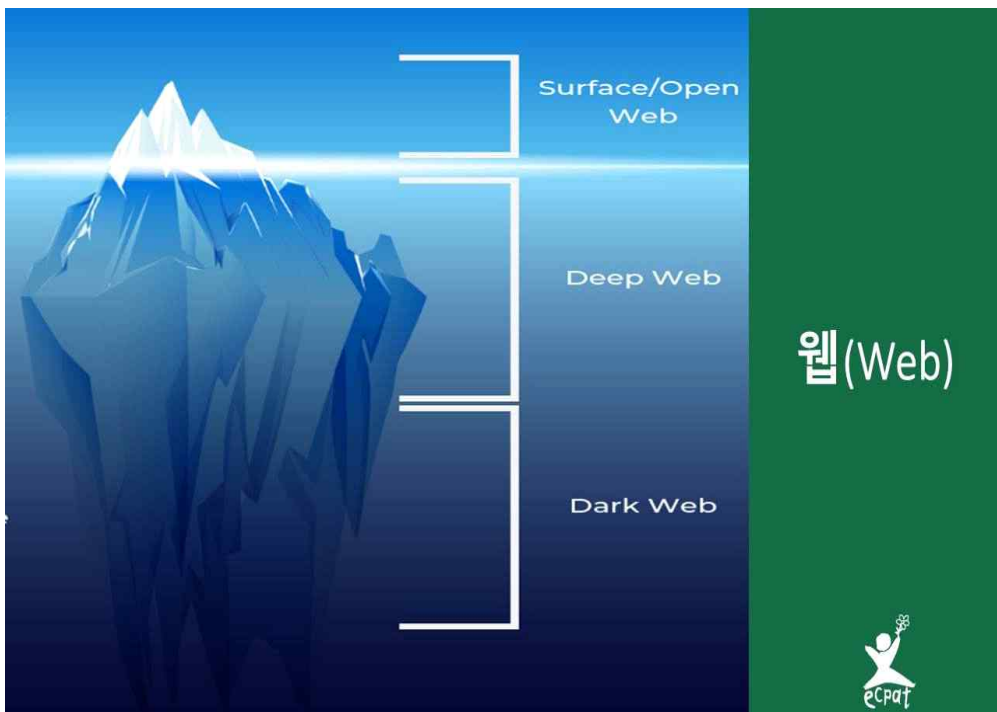
2. 아동 성 착취물 CSEM(Child Sexual Exploitation Material) - Scale

3. CSEM 란?



4. CSEM의 사용

5. 문제 해결방안



Einar Otto Stangvi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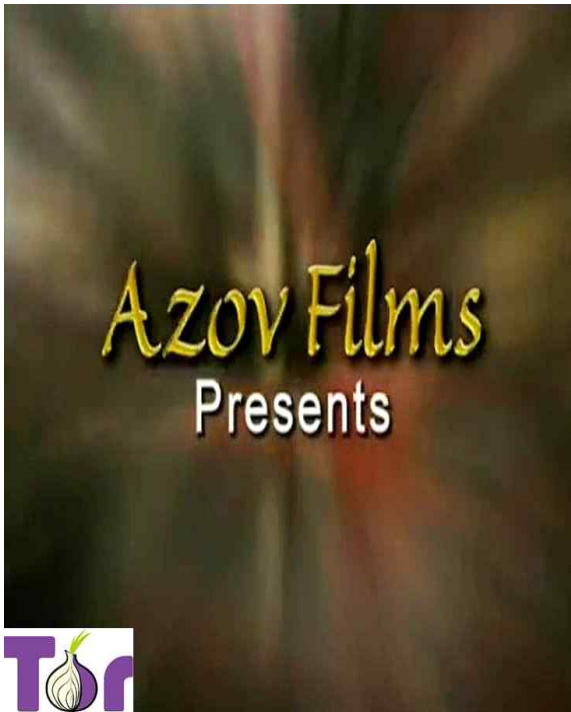
- 노르웨이 국적 해커
- [Child' s Play] 공개
- “CSAM is just a google search away”
“아동성착취물은 구글 서치 기능으로도 찾을 수 있다”
- 처음 영상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서치엔진을 통해 영상을 찾아낸다



Clear Web

- 영국 수사관들이 발견한
웹상 아동성착취물의 반은
트위터에 책임이 있음
- 비밀 그룹/메세지





DeepWeb

azovfilms.com

- 캐나다인 운영
- 50개국 이상에서 348명 체포
 - 386명 아동 구조
- 45 terabytes 아동성착취물 검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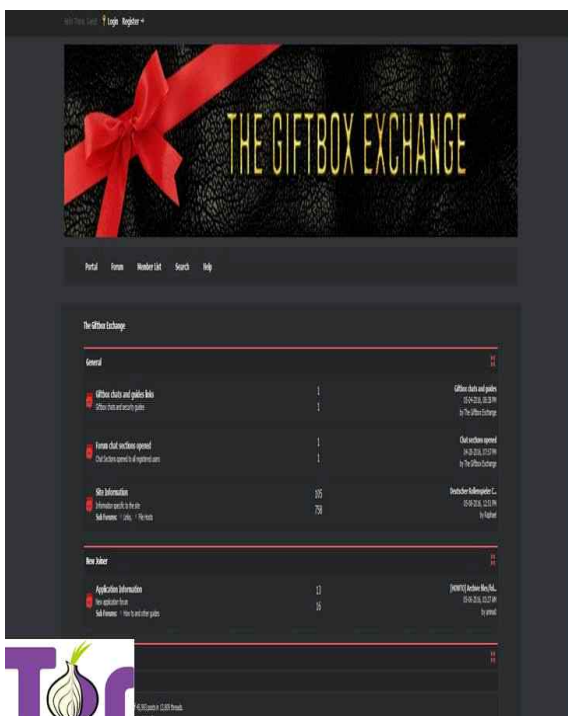


DeepWeb

Child's Play

- 캐나다인 운영
- AFP가 11개월간 운영
- 38개국에서 검거
- 250,000 영상물 업로드
- 100만 이상 다운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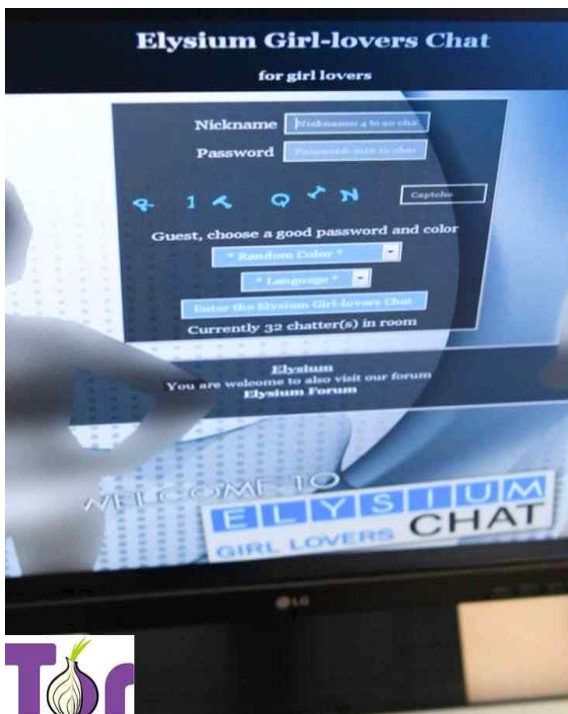




DeepWeb

Giftbox Exchange

- 미국에서 운영
- 72,000명 회원
- 56,000개 게시물
 - 영유아물
- AFD에게 인계
- Elysium의 발견에 도움



DeepWeb

Elysium

- 독일인 운영
- 110,000 회원
- 독일 통신기밀 법
(communication privacy law)
재검토



Welcome to video

Upload videos

Description or keyword:

At least 15MB, Max 1900MB also selectable up to 10 videos

No files selected.

Note:
Click the button only once.
Wait for message to success upload.
Do not upload **adult porn** over the age of **15**

© NCA



DeepWeb

Welcome to Video

- 한국인 운영
- 38개국에서 검거
- 250,000 영상물 업로드
- 50% 새로운 아동성착취물
- 8 terabytes 검거
- 100만 이상 다운로드



1. ECPAT 소개

2. 아동 성 착취물 CSEM(Child Sexual Exploitation Material) - Scale

3. CSEM 란?

4. CSEM의 사용



5. 문제 해결방안

- 언론의 자유는 접근의 자유가 아니다
- 극단적인 표현은 자제하고 있고, 우리의 주장이 전세계 모든 집을 뒤흔드는 말은 아니지만, 현재 사회는 소아성애자들이 피해자를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자유공간을 주고있다
- 사업체들은 스팸이나 말웨어를 골라내는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적극적이지만, 그것들이 아동학대물을 찾아낼 순 없다
- 메신저 서비스에서 끝대끝암호화 금지
- 자료의 연령확인 보장



‘사생활’의
역할



경제흐름을
따라가야
한다





- 수사를 뒤집어야 한다. 범죄 영상에서 범죄현장 발견으로,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 경찰은 지역적이다-한 지역사회를 책임지며 그들의 세금으로 보수를 받는다. 그러나 문제는 국제적이다(경제적 확충지원의 필요)
- 경찰 수사와 예산으로 만들어진 한계를 깨야 한다
- 새로운 수사방법과 도구 필요
- 도덕적으로 극복해야 할 사항들과 선을 넘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것들



현재의
법은
적합하지
않다

- 법률은 가해자들이 사용하는 기술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께 변화하여야 한다.
- 가상화폐 거래에서도 거래자의 정보와 신원이 확인되어야 한다
- 아동성착취물 소유는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 제작과 유포는 적절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 가해자가 네트워크를 만들고 TOR를 사용하여 숨는 것을 고려하여 그 또한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 법적 제재를 빠져나가기 위한 정보를 만들거나 공유하는 행위도 금지되어야 한다
- 법은 경찰수사를 통제하면서 그에 맞는 권한 또한 부여해주어야 한다

Thank you very much



ENDING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Thomas Mueller
Deputy Executive Director
ECPAT International
Thomasm@ecpat.net

5.

그루밍 범죄 법제화

김 재 련(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

그루밍범죄 법제화

온·세상, 따뜻한 세상

변호사 김재련

Grooming의 본질: 성착취

- ◆ 온라인상의 성적대화, 성적행위 통한 성착취
- ◆ 오프라인 상의 만남을 통한 성착취

Grooming의 위험성

◆ 실제 만남 없이도 아동의 성적 발달 침해

-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 전송
- 신체 특정부위 사진촬영 및 해당 사진 전송요구
- 웹캠을 통한 성적 대화 및 해당 영상 녹화, 유포

3

Grooming의 대상

- ◆ 피해자: 위험한 상황에 대한 예측능력 부족한 아동
- ◆ 취약함: 연령, 경제적, 지적, 심리적, 관계적 영역
 - 성적 무경험의 아동
 - 성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아동
 - 가정, 학교, 사회에서 지지기반 취약한 아동

4

Grooming 단계별 특징

- ◆ 접근 단계 : 친절, 신뢰쌓기
 - 과도한 칭찬, 배려, 감정적 동조, 무조건적 지지
- ◆ 심리적 통제, 착취단계 : 강요, 위협
 - 만남 불응, 성적 요구 불응에 대한 폭로예고
 - 불안감, 죄책감 부여
- ◆ 성적 착취
 - 성적 의도 담긴 대화, 행위 지속 및 비밀유지 강요
 - 아동의 성적 발달에 지속적, 심각한 영향 초래

5

그루밍 범죄 법제화 방향에 대한 제언

- ◆ 온라인, 오프라인 그루밍 구별하여 법제화
- ◆ 온라인: 그루밍 범죄 처벌규정 신설
- ◆ 오프라인: 신뢰관계이용 성착취 처벌규정 신설
- ◆ 의제강간, 추행 연령 기준 상향
 - 현행 13세->16세로 상향해야 함

6

◆ 0-16세 미만

- 온라인 성착취: 그루밍 범죄로 처벌
- 오프라인 성착취: 의제강간, 의제강제추행

◆ 16세 이상-19세 미만

- 온라인 성착취: 그루밍 범죄로 처벌
- 오프라인 성착취: 신뢰관계이용 성착취로 처벌

7

온라인, 오프라인 구별 법제화 제안

◆ 오프라인 상의 그루밍: 명확한 '판단'의 어려움

- 물리적 폭력, 언어적 폭력 없는 구조적 폭력
- 판단자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 상존

◆ 오프라인 상의 그루밍

- 신뢰관계를 이용한 성착취인 경우가 대부분임

◆ 신뢰관계 여부, 피해자 연령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부분만 확인되면 그루밍 불문 성착취자 처벌₈

영국: Abuse of position of trust

◆ Sexual Offences Act(2003)

- ◆ 미성년자와 신뢰관계있는 18세 이상의 자가 18세 미만자와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성관계**했을 경우 처벌
- ◆ 신뢰관계 적용범위: 아동복지시설, 거주, 숙박시설, 병원, 치료소, 교육, 보호, 양육, 감독 지위에 있는 교원, 돌봄 수행자, 돌봄 기관 종사자, 보호자
- ◆ 신뢰관계 **범위 확대 논의**: 스포츠 코치, 유스클럽 리더, 종교그룹 리더, 커뮤니티 그룹 리더 등

· 교육, 보호, 감독자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관련 법, 제도 현황 및 과제/ 전윤정(국회입법조사처, 사회학 박사, 19.2.27.자 이슈와 논점 내용 중 일부 발췌 인용).

독일: 신뢰관계 있는 자의 **성적 남용** 처벌

- ◆ 독일 형법 제 13장 성적 자기결정에 관한 범죄
 - 교육, 보호 감독자와 미성년자의 성범죄 규율
- ◆ 14세 미만: 절대적 보호
- ◆ 14세-16세: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경우** 처벌
 - 교육, 훈련, 돌봄 관련 신뢰관계 있는 자가 16세 미만자와 성관계하면 처벌
- ◆ 16세-18세: 피해자와의 **신뢰관계 또는 종속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경우** 처벌규정
 - 교육, 훈련, 돌봄 관련 신뢰관계 있거나, 고용, 노동관계에서 종속적 관계에 있는 18세 미만자와 의존적 관계를 남용하여 성관계를 한 경우 처벌
- ◆ 교육, 보호, 감독자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관련 법, 제도 현황 및 과제/ 전윤정(국회입법조사처, 사회학 박사, 19.2.27.자 이슈와 논점 내용 중 일부 인용)

Grooming 처벌 입법례

- ◆ 영국 : Sexual Offences Act(SOA 2003)
 - 성적 착취 의도로 16세 미만 미성년 아동 만나는 것
 - 18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만 아동과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아동과 의사 소통하는 행위
- ◆ 호주: Crimes Legislation Amendment (Telecommunications Offences and Other Measures) Act (No. 2)
 - 18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아동과 온라인상 의사 소통시 부적절한 내용 포함, 성적대화를 하는 행위

11

Grooming 처벌 입법례: 독일

- ◆ 사이버 그루밍 처벌규정
 - 2003년 형법 규정 개정 통해 입법화
 - 아동에 대한 성적 남용행위 처벌규정
 - “아동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거나 아동으로 하여금 자기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게 한 자, 아동으로 하여금 성적 행동을 하게 하기 위해 문서(음성, 기록, 도화 기타 표현물)를 통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친 자(독일 형법 제 176조 4항)

- * 사이버그루밍 미수 처벌에 관한 형법 개정 법률안(2019.6월/ 박희영, 법학박사,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 연구소 연구원) 논문 중 일부 발췌내용임

12

Grooming 처벌 입법례: 독일

- ◆ 사이버 그루밍 미수 처벌규정 법률안 입법예고
 - 2019.6월. 사이버그루밍 미수처벌 법률안 입법예고
- ◆ 불능미수에 대한 처벌 입법화
 - 사이버 대화 상대방이 아동이라고 착오한 행위자
 - “외관상 아동상황”이론에 초점 맞춤
 - 범죄자가 상대방을 외관상 아동으로 인식한 경우 뿐 아니라 컴퓨터로 제작된 가상의 채팅로봇과의 통신도 행위자가 착오로 아동이라 생각하고 아동에게 영향을 주어 성적 행위 하도록 한 경우 처벌함

13

제안: 사이버 그루밍 처벌규정의 기본틀

- ◆ 19세 이상의 성인이 온라인 상으로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한 자에게
 - 1) 성적 의도가 담긴 부적절한 대화를 진행, 유도하거나
 - 2) 성기, 가슴, 나체 등 성적 불쾌감 유발하는 사진, 영상 등을 전송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 3) 성적 의도가 담긴 일체의 행위를 하거나 해당 행위에 대한 요구
 - 4) 성적 의도를 가지고 오프라인 상의 만남을 요구하거나 오프라인 상의 만남을 시도하는 행위

14

- ◆ 의제강간, 추행 연령 상향: 13->16세 상향
- ◆ 성인의 미성년자에 대한 신뢰관계 이용한 성관계 및 성적접촉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간음, 추행 등)
 - 신뢰관계의 범위/ 신뢰관계 인정,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해당 규정으로 처벌
- ◆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 성적 의도를 가진 온라인 상의 대화, 행동 및 오프라인 상의 만남 요구, 만남 시도행위에 대한 처벌

45

“온 세상, 따뜻한 세상”

감사합니다.

6.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위장수사의 필요성

장 응 혁(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위장수사의 검토

계명대 장응혁

I. 들어가며

아동·청소년은 미래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서 최근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인구절벽현상을 거론할 필요도 없이 우리 사회가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존재이다. 다만 우리 형사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를 여러 가지 카테고리¹⁾로 나누어 그 보호의 정도와 방법을 달리 하고 있다. 본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위장수사를 검토한 것으로 우선 그러한 위장수사를 통해 보호하려는 아동·청소년의 성이 무엇인지 즉 어떠한 성적 침해에 대응하려는지를 명백히 하려고 한다. 이러한 한정이 없다면 위장수사의 필요성은 물론 허용성 등도 제대로 검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II. 아동·청소년 성보호의 의의

1. 아동·청소년의 의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은 제2조(정의)에서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면서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함으로써 연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법상으로는 연나이 19세 미만이 모두 아동·청소년에 해당되나 형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과 추행을 모두 범죄로 인정함으로써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있고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은 장애¹⁾가 있는 경우 19세 이상의 사람에 의하여 간음이나 추행을 당하는 경우에만 동일하게 보

1)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미약하게 하는 장애여야 한다.

호하고 있다.

따라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은 장애가 없는 경우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으로부터 보호될 뿐이고 예외적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으로서 궁박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간음 또는 추행으로부터 보호될 뿐이다.

이처럼 우리 형사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나이 및 장애·처지에 따라 성폭력범죄로부터의 보호 정도를 달리하고 있는데 크게는 13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13세 미만은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므로 본고의 대상은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 즉 13세 이상 연나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다.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보호의 차이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13세 이상 연나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장애 유무 또는 궁박한 상태의 경우에만 보호의 정도가 달라지고 있는데 또 하나 고려해야 할 문제는 성적 침해가 성폭력범죄로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2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형법상 강간 등의 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성폭력범죄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죄로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와 함께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부터 제15조의 죄를 포함하고 있다.

이중에서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를 제외하면 제12조부터 제15조(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는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처벌조항인데 성적 관계가 성매매로 인정되는 경우 청소년은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벌을 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즉 13세 이상 연나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경우 경우에 따라 보호 정도가 차이날 뿐만 아니라 자발적 성매매로 인정되는 경우 보호처분까지 받게 된다. 즉 보호가 아닌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²⁾ 그러나 자발적 성매

2) 이러한 점이 청소년의 피해신고를 어렵게 하며 위장수사를 필요로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보호처분 자체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보호처분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점도 큰 원인의 하나이기에 여기서는 더 이상의 자세한 논의는 하지 않는다.

매와 비자발적 성매매는 그 구별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본고에서는 자발적 성매매도 논의의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다.³⁾ 그리고 이러한 성매매가 전형적인 피해자없는 범죄의 하나로 함정수사 등의 특수한 수사기법이 활용되어 온 분야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본고에서도 주된 논의대상이 될 것이다.

Ⅲ. 위장수사의 의의

1. 위장수사의 개념

위장수사란 범죄인 또는 범죄를 계획중인 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수사관이나 정보원이 임시로 위장 또는 가상의 역할, 신원을 사용하는 수사기법⁴⁾을 말하며 학계에서는 비밀수사, 함정수사, 잠입수사 등 다양한 용어로 정의되고 있다. 다만 비밀수사의 경우 드러나지 않게 수사를 한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위장신분을 통한 접촉이나, 적극적인 가상상황의 연출을 통한 수사와는 맞지 않고 함정수사라는 용어는 범의를 유발하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위법수사가 되기 쉬우므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잠입수사는 범죄조직에 신분을 위장하여 잠입한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므로 본 토론회에서 주된 대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 대상범죄의 수사기법으로는 위장수사의 개념 정의가 가장 적절할 것이다.

2. 위장수사의 의의

이러한 위장수사는 프랑스 형사경찰의 창설자인 비독이 원조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미국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19세기 후반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여 처음에는 외국인 범죄조직 척결을 위해 마약이나 장물범죄 그리고 음란물범죄 등 일반형사사건의 수사에 주로 활용되었고 현재는 화이트칼라범

3) 더구나 최근 청소년의 성매매를 모두 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로 보자는 주장이 우세하다.

4) 미국 DEA 교육자료에서는 위장수사를 “The assumption of a fictitious role or identity on a temporary basis by a law enforcement officer or a Confidential Source, under the direction of law enforcement, to obtain evidence or other information relating to the violation of the law”라고 설명하고 있다.

죄 수사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위장수사는 “무고한 피의자를 조사하게 되는 위험부담을 줄이고, 범죄를 적발,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받게 하는 매우 효과적인 수사기법”이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추정적 증거가 아니라 직접적 증거로 사건을 입증가능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증인의 증언에만 의존하는 문제를 줄여준다”는 점이 장점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위장수사는 다른 수사기법과 달리 위장수사관, 수사책임자, 수사기관, 검사 등 수사참여자 모두에게 인력관리, 훈련, 위장거래자금, 특수장비 등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미국에서도 법무부장관이 지침을 정하여 그 허용범위내에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⁵⁾

다만 이러한 문제점들은 범죄조직에의 장기간의 잠입 및 활동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와는 큰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영국의 경우 경찰이 아동성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인터넷 상에서 은밀하게 잠복해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수사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⁶⁾

IV. 아동·청소년 정보호를 위한 위장수사의 검토

이하에서는 영국의 위장수사 기준을 살펴 본 후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을 살펴 보기로 한다.

1. 영국의 사례

영국의 경우 위장수사 관련 절대 범죄를 조장해서는 안 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5) 미국 FBI의 지침은 다음과 같다.
<https://vault.fbi.gov/FBI%20Undercover%20Operations%20FBI%20Undercover%20Operations%20Part%201%20of%201/view> 다만 본고에서는 토론회 참석자들의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하여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영국의 사이버 위장 수사를 토론회 개최자가 번역한 책(아동·청소년을 노리는 위험한 손길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을 기준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6) 엘레나 마르텔로조/탁틴내일(역), 아동·청소년을 노리는 위험한 손길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한울림, 2018, 203쪽.

다만 그 경계선은 명백하지 않아 지침상 정보원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의 범행 의도에 관한 정보를 줄 때 다음의 경우에 정보원의 참여가 허락된다.

1) 범죄 계획과 실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2) 오직 사소한 역할만을 수행하는 경우, 3) 사망, 상해와 같은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범죄 모의 또는 무기 소지 시도와 같이 심각성이 덜한 범죄일지라도) 경찰이 주요 범죄자를 좌절시키고 체포함에 있어 정보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그러나 정보공작원의 예를 들어 선동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았을 명백한 법 위반을 저지르도록 유혹하는 경우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⁷⁾ 대안으로 수사를 위해서 제안받은 범죄에 열정과 흥미를 보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개된 사례에 따르면 위장수사관 데이브는 채팅방에서 방 주제(아동음란물)와 관련된 글을 올리거나 사진을 게재해 유사한 관심사를 갖고 있다는 걸 증명함으로써 일원이 되는 것에 성공하면서 동시에 게재한 모든 이미지는 법에서 규제하는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었다.⁸⁾

2. 한국에의 적용 검토

우리나라 경찰의 수사능력은 (특히 사이버범죄 수사분야에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으므로 온라인 그루밍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나라만의 한계가 있는데 우선 인터넷 사기 및 명예훼손 등 다른 업무의 부담이 큰 한편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수사체계는 비교적 최근에 정비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문제들은 좀 더 경찰력을 증원하는 등 정책적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며 최근 디지털성범죄 관련 사회적 관심이 높음을 고려할 때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온라인 그루밍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루밍이 아직 범죄화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발을 위한 수사기관의

7) “범죄자가 위장경찰관에게 “너는 어떤 사진을 가지고 있어?”라고 물었을 때 위장경찰관은 질문을 무시하고 “마지막 게 다야”라며 다른 것을 물어보았다.”는 사례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엘레나 마르텔로조/탁틴내일(역), 아동·청소년을 노리는 위험한 손길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한울림, 2018, 211쪽.

8) 엘레나 마르텔로조/탁틴내일(역), 아동·청소년을 노리는 위험한 손길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한울림, 2018, 209-210쪽.

활동에 제약이 크며 더 나아가 적발을 위한 온라인상 점검활동 등이 사찰로 까지 오해받기 쉽다는 점이다.

물론 청소년성매매 권유의 처벌뿐만 아니라 아동음란물소지, 불법촬영물 관련 다양한 행위가 범죄화되어 있어⁹⁾ 온라인 그루밍의 일정 단계 또는 특정 유형의 경우 대응이 가능하고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가장 핵심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대안이 없다. 즉 영국에서는 그루밍 관련 가장 심각한 범죄는 어떤 이가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할 의도를 갖고 현실에서 만남을 위해 이동하는 것이며¹⁰⁾ 이러한 행위가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상 이러한 규정이 없고 따라서 경찰은 사전에 다른 위법을 적발하지 못하는 한 성적 침해가 발생한 이후에만 수사가 가능해 진다.

아울러 이러한 범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아동·청소년들에게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선도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활동하는 온라인 공간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한국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3. 위장수사 활성화를 위한 제언(여가부 특사경 활용 또는 민간인)

이러한 위장수사를 반드시 경찰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범죄인 또는 범죄를 계획중인 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수사관이나 정보원이 임시로 위장 또는 가상의 역할, 신원을 사용하는 기법인 위장수사는 그것이 강제수사가 아닌 한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할 수 있으며¹¹⁾ 나아가 그러한 수사기관이 경찰로 한정될 필요도 없다. 다만 민간인이 정보를 얻고 이를 신고하더라도 범죄화가 미흡한 현 상황에서는 결국 수사기관의 위장수사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의한 위장수사가 필요한데 여성가족부는 2013. 3. 29.

9) 더 나아가 강제추행의 범위도 넓게 해석되고 있다. 2018년 대법원은 자신의 신체를 찍어 보내도록 한 행위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였다.

10) 영국의 2003년 성범죄법은 길들이기같은 그루밍 과정을 처벌하기보다는 그루밍을 통해 아동을 만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성적 목적에서 아동을 그루밍하고 그 아동과 만나려는 의도를 가진 범죄자의 행동을 저지하고자하는 것이다.

11) 우리나라에서도 한 시민단체의 채팅앱 모니터링 요원인 민간인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음란물을 구입한 후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동아일보, “음란물 감시자의 함정수사 이유”, 2019. 11. 7(<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107/98250316/1>).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성매매에 대하여 유도수사를 도입하겠다고 하였으나 무산되었다. 다만 그 당시 무산된 이유를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 13세 미만 초등학교 대상 성매수자를 적발하는데 우선적으로 유도수사를 이용하고 이를 위해 연구용역과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경찰청·법무부 등과 협의하여 법제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관련 부처와 제대로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제도의 도입만을 밝힘으로써 국민의 호응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 한 것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경찰청·법무부 등과 협의를 하고 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여성가족부가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자체로 특별 사법경찰관리를 두어 성매매 단속 및 수사를 전담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V. 위장수사의 남용과 그 문제점

이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위장수사를 간단히 검토하였다. 현재 위장수사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성매매 등으로 허용범위를 한정한다면 이용하는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오히려 문제는 위장수사의 남용인데 그루밍 등의 행위가 범죄화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히 아동을 가장하여 채팅하는 것만으로는 범죄의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고 그 이상의 정보를 획득하거나 범인의 검거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활동이 위장수사를 넘어 함정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기존에 적법하다고 인정되었던 함정수사에 대해서도 점차 법원의 판단은 엄격해지고 있는데 최근 법원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여성인 척하며 대화방을 만들고, 마약이 있으면 성관계를 하겠다는 취지로 접근한 경찰관의 수사에 대하여 “대화로 마약류 소지·투약, 판매 혐의가 없음을 확인하면 수사는 멈춰야 한다”고 하며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이용해 대마 매수로 나아가게 하고 그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삼은 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고¹²⁾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하며 “경찰관들이 고가의 주류를 주문함으로써 피고인

12) 서울신문, “마약 구해으면 성관계해준다는 경찰에 넘어간 20대 무죄”, 2019. 8. 31(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831500019&wlog_tag3=naver).

으로 하여금 금전적 유혹과 압박을 받게 한 점, 직장 내 승진을 위한 상관 접대 필요성 운운으로 동정심이나 감정 호소 등의 수단을 사용한 점 등은 함정수사로 판단할 수 있는 사정이 되는 반면에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었다고 볼 만한 검사의 증거는 없으므로 경찰관들의 이 사건 단속은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¹³⁾

13) 리걸타임즈, “[형사]‘손님 가장’ 경찰관에 성매매 알선…잇따라 공소기각무죄”, 2019. 4. 25(<http://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819>).

메 모

유엔아동권리협약채택 30주년

아동 · 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토론회

그루밍 범죄화와 성적동의연령 기준 재정립

발 행 일	2019년 11월 28일 인쇄/발행
발 행 인	최 영 희
발 행 처	(사)탁틴내일,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ECPATKOREA탁틴
주 소	(03175)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 내일신문빌딩 지하2층
연 락 처	02-338-7480
팩 스	02-3141-9339
홈페이지	www.tacteen.net
디자인/인쇄	타라그래픽스
● (사)탁틴내일은 여성과 아동, 청소년을 위한 사회단체입니다. ● 본 자료의 저작권은 (사)탁틴내일에 있으며 무단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	